

「2017 촛불권리선언」 과
「100대 촛불개혁과제」

2017. 3. 11

박근혜권 퇴진
비상국민의 행동

순서

2017 촛불권리선언 -----2쪽

100대 촛불개혁과제-----8쪽

문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bisang2016@gmail.com)

시민참여특위 이승훈 / 최현모

정책기획팀 이창근 / 주제준

적폐청산특위 박래군

재벌구속특위 김태연

2017 촛불권리선언*

불의와 억압이 있는 곳에 우리 시민들의 저항이 있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부도덕한 정권에 항거한 4.19혁명과 5.18 광주민주항쟁, 그리고 87년 시민항쟁을 우리는 기억한다. 2002년 효순이와 미선이를 추모하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하며 촛불을 들었던 우리들은 또다시 한 겨울의 광장을 지키며 촛불을 들었다.

우리가 함께 밝힌 촛불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권력을 독점한 소수 세력에게 유린되고 조롱당하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우리의 촛불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의 통곡이고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원한이었으며 재벌에게 뭇을 빼앗긴 노동자와 서민의 눈물이다. 우리의 촛불은 꿈을 잃어버린 청년과 청소년의 한숨이고, 차별과 혐오에 짓눌린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들의 울분이었으며, 외교와 안보의 미명아래 존엄을 짓밟혀온 이 땅 민초들의 커켜이 쌓인 설움이다.

하지만 우리 촛불시민은 그 어떤 울음과 아픔도 함께 끌어안으며 공감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어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함성은 마침내 국정을 농단한 소수 권력자들을 끌어내렸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우리 촛불시민의 직접행동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헌법을 살려냈다. 우리의 촛불은 추위를 녹이고 어둠을 걷어냈다. 전국 방방곡곡의 찬바람 몰아치는 광장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되는 문화를 만들어내며, 공감과 연대로 함께 만들 새 세상의 따뜻한 희망을 나누었다. 우리는 돈만 아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존중되고 인간존엄이 확보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향한 거대한 행진을 이어왔다.

우리 촛불시민은 부당한 권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긴 여정의 시작임을 안다. 이 선언은 촛불 들고 광장에서 함께 외치고, 토론하며 나누었던 희망과 꿈을 엮어낸 것이다. 우리가 함께 만든 이 선언은,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예 같은 삶을 강요하며, 누군가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정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사법체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이다. 이제 우리 촛불시민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켜왔던 그 뜻으로 삶의 현장과 일터를 바꿀 것이며, 아래로부터 민주주의의 역량을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하여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

* 2017 촛불권리선언은 2017년 2월 18일 개최된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시민대토론 참가자 중 각 모둠에서 추천된 50인이 성안위원회가 되어, 토론 중 시민참가자들이 적어준 의견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성안위원회는 2월 25일과 3월 4일 두 차례에 걸친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선언문으로 녹여낼 수 있었습니다.

촛불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의정치를 개혁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전진시키는 주권자행동이다.

국민이 투표장을 넘어 생활 전반에서 주권을 행사할 때, 소수 정치세력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국민은 차별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현행 선거제한 연령을 더 낮추어 더 많은 이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치 대표자 선출과정에 국민의 의사와 지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해야 하며,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엄격한 투/개표를 보장하기 위해 시민 감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촛불은 특권세력을 위해 남용된 공권력을 용납하지 않는 주권자의 직접행동이다.

모든 사람은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앞세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국가권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와 공공성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력에 의한 부당한 사찰과 간섭은 금지된다. 경찰과 사법기관, 정보기관은 시민이 승인하는 제도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국가폭력으로 생명·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며,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촛불은 부패와 특권을 만드는 일체의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정당한 항의이다.

사람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 나이, 신체조건이나, 출신 국가와 지역, 그리고 가족 형태,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학력과 고용형태, 종교나 사상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국가폭력 희생자, 세월호 유가족 등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을 실현할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우리는 연대와 공감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

촛불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언론을 통제된 권력과, 이에 협력한 언론에 대한 심판이다.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하며 이 권리를 공권력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이유로 문화예술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양심수는 석방되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해 언론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공권력 행사는 금지된다. 언론은 민주적인 공론의 장을 제공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의무를 지닌다.

촛불은 재벌이 누려온 특권과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민 행동선언이다.

국민은 경제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요구한다. 국가는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사회 자원을 분배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만들고 엄격한 법집행으로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누구도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세습할 수 없다. 사회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영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는 재벌의 횡포를 방지하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폐지하고 부당하게 취득한 부를 환수하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 풀뿌리 경제와 일하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

촛불은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불행한 노동을 없애고자 하는 시민들의 절규이다

국가는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모든 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평등한 노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며,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없애며, 포괄임금제와 성과연봉제를 폐지해야 한다. 국가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실현하고 불공평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촛불은 생존권을 보장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선언이다.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전 생애에서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공평 과세와 보편적인 복지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 '건강한 삶'은 국민의 권리이다. 보건의료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되며, 국가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부양의 무제·장애등급제 폐지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밥쌀수입 중단·쌀값 보장으로 농민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 삶의 기본인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무분별한 강제철거와 노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빈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촛불은 불평등한 교육, 서열화·획일화된 훈육체제에 대한 저항이다.

사람은 누구나 학습할 권리를 갖는다. 학습 주체는 교육의 주체이며, 그 누구도 훈육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우선순위는 학습 주체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제 교육의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없애나가야 한다. 교육이 권력의 정당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교육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어떤 국민도 경제적 형편의 차이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촛불은 평화로운 공존의 권리와,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외침이다.

사람은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인류 평화와 공존에 기여할 책임을 지닌다. 남과 북의 정부는 서로 체제를 존중하고 군사적 대치를 멈추며, 인도적 지원과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공존과 통일을 위해 체결된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국가의 외교·국방·통일 정책은 평화주의에 입각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결정·집행되어야 한다. 국가안보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촛불은 모든 생명이 자신의 터전에서 조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진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로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사람은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은 자신과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알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여러 정책과 제도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재난.참사를 예방하고 위협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기업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 책임이 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7. 3. 11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2017 촛불권리선언> 에 함께 한 사람들

wisdom, 간은균, 강건, 강경운, 강규수, 강기한, 강대수, 강대승, 강동주, 강동진, 강미경, 강미나, 강미희, 강민서, 강민정, 강보람, 강세별, 강석찬, 강석희, 강선모, 강성민, 강성수, 강성태, 강성희, 강수정, 강수현, 강승한, 강승현, 강신만, 강신영, 강연화, 강영희, 강요셉, 강원일, 강원화, 강은경, “강이경가족(정진,봉구)“, 강인재, 강점숙, 강정구, 강정미, 강정현, 강준혁, 강지민, 강지산, 강지영, 강지은, 강찬희, 강창수, 강철중, 강춘향, 강춘희, 강현숙, 강현식, 강현정, 강현주, 강혜빈, 강홍구, 강효경, 고경석, 고경원, 고다은, 고대영, 고명진, 고명희, 고병천, 고석동, 고석수, 고성두, 고순정, 고시삼, 고아라, 고연주, 고원석, 고원진, 고은주, 고은지, 고인용, 고정은, 고현주, 고희영, 고희운, 공복순, 공옥자, 공정호, 공태현, 공현주, 공혜경, 광구환, 광나운, 광노현, 광미순, 광병훈, 광윤경, 광이경, 광혜진, 구민선, 구옥희, 구은희, 구제형, 구정옥, 구찬희, 구혜영, 구화옥, 권구왕, 권도운, 권미영, 권민경, 권보람, 권복희, 권봉수, 권순애, 권신애, 권영문, 권예림, 권오진, 권오진, 권오철, 권용하, 권은빈, 권은정, 권장희, 권정아, 권진환, 권태선, 권태원, 권태은, 권혜영, 권혜형, 권혁민, 권혜린, 권혜인, 금빛, 금성순, 길봉성, 길주연, 길찬우, 길현준, 김건수, 김건승, 김건중, 김건훈, 김경갑, 김경탁, 김경례, 김경미, 김경숙, 김경애, 김경옥, 김경웅, 김경일, 김경희, 김계봉, 김관식, 김관형, 김광모, 김광미, 김광배, 김광선, 김광성, 김광식, 김교영, 김귀섭, 김귀영, 김귀옥, 김규원, 김금자, 김금철, 김기, 김기성, 김기웅, 김기전, 김길수, 김나래, 김나영, 김낙현, 김남수, 김남숙, 김남하, 김남향, 김내라, 김다영, 김대성, 김대용, 김대형, 김덕자, 김덕진, 김도연, 김도이, 김도현, 김도형, 김도희, 김동규, 김동성, 김동수, 김동연, 김동완, 김동욱, 김동인, 김동진, 김동훈, 김린, 김만옥, 김명길, 김명석, 김명선, 김명숙, 김명신, 김명원, 김명화, 김명환, 김명희, 김모드, 김미경, 김미금, 김미나, 김미동, 김미령, 김미선, 김미소, 김미숙, 김미애, 김미옥, 김미자, 김미정, 김미짓, 김미향, 김미현, 김미화, 김미희, 김민배, 김민석, 김민선, 김민숙, 김민승, 김민영, 김민정, 김민주, 김민철, 김민호, 김민희, 김병수, 김병숙, 김병일, 김병철, 김병학, 김병호, 김보경, 김복분, 김복선, 김복순, 김봉선, 김봉숙, 김봉식, 김봉현, 김부기, 김부성, 김비아, 김사성, 김삼영, 김삼정, 김상겸, 김상기, 김상아, 김상원, 김상하, 김상희, 김서정, 김서호, 김선경, 김선문, 김선애, 김선옥, 김선우, 김선정, 김선중, 김선화, 김선희, 김성국, 김성기, 김성득, 김성수, 김성실, 김성원, 김성일, 김성자, 김성재, 김성준, 김성현, 김성환, 김성훈, 김성희, 김세연, 김세운, 김소망, 김소연, 김소영, 김소형, 김송남, 김수경, 김수빈,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현, 김수환, 김수희, 김순길, 김순덕, 김순태, 김승겸, 김승우, 김승하, 김시민, 김시우, 김시웅, 김식, 김신명, 김신영, 김아, 김안수, 김애숙, 김양수, 김연실, 김연심, 김연정, 김연주, 김연지, 김연후, 김연희, 김영구, 김영국, 김영규, 김영기, 김영래, 김영미, 김영민, 김영빈, 김영석, 김영수, 김영숙, 김영순, 김영신, 김영아, 김영애, 김영웅, 김영인, 김영재, 김영준, 김영철, 김영희, 김예경, 김예슬, 김오기, 김오준, 김옥, 김옥순, 김요한, 김용궁, 김용대, 김용덕, 김용득, 김용수, 김용식, 김용원, 김용제, 김용혁, 김우, 김우경, 김우영, 김우중, 김운기, 김원,

철, 신엘라, 신엘러, 신연숙, 신예호, 신용대, 신우용, 신우진, 신은진, 신의석, 신장식, 신재영, 신재은, 신정호, 신주은, 신주은, 신준범, 신진희, 신찬식, 신창섭, 신창숙, 신창식, 신춘식, 신태훈, 신헌민, 신헌영, 신헌준, 신헌희, 신희선, 신희진, 신희식, 심규철, 심다희, 심동식, 심미예, 심수민, 심순덕, 심순례, 심영보, 심영태, 심원섭, 심원중, 심유경, 심은충, 심은혜, 심재영, 심재은, 심채원, 심춘성, 심현덕, 심희준, 안건우, 안경호, 안경희, 안규리, 안규열, 안남옥, 안덕관, 안덕재, 안리주, 안리림, 안병철, 안병호, 안삼열, 안수진, 안숙희, 안순중, 안순호, 안승문, 안애주, 안영미, 안영호, 안영환, 안영희, 안용득, 안용희, 안유미, 안윤희, 안은영, 안인광, 안재영, 안재현, 안정선, 안정훈, 안조형규, 안종승, 안종화, 안중순, 안지원, 안지중, 안창은, 안채윤, 안철, 안충관, 안태영, 안현일, 안혜린, 안효림, 안효숙, 안희찬, 양경숙, 양경준, 양길승, 양동화, 양동훈, 양명숙, 양병일, 양서현, 양선화, 양성구, 양성호, 양순자, 양승준, 양영석, 양영인, 양윤경, 양용규, 양인자, 양재석, 양재연, 양정순, 양정심, 양정윤, 양종훈, 양준석, 양지훈, 양진영, 양춘근, 양해경, 양희수, 양희철, 엄다현, 엄도영, 엄득중, 엄정은, 엄정일, 여미경, 여성수, 여순열, 여주연, 여형준, 연시영, 연천희, 염연희, 염윤희, 염지현, 염형철, 예상희, 오경미, 오경숙, 오경진, 오광식, 오기철, 오명심, 오미정, 오미희, 오민환, 오병환, 오선경, 오선영, 오선희, 오성근, 오세창, 오승희, 오수미, 오순이, 오슬기, 오승준, 오영경, 오영숙, 오영심, 오영욱, 오영주, 오용섭, 오운석, 오원석, 오은영, 오일, 오일룡, 오정희, 오주민, 오지수, 오지은, 오진계, 오진이, 오태균, 오태환, 오현경, 오현정, 오혜련, 오홍진, 옥상원, 왕희정, 우광희, 우소영, 우연에는 용기름, 우영택, 우유진, 우인근, 우현아, 우혜윤, 원근재, 원민권, 원순미, 원종진, 위양자, 위정량, 위혜정, 유경석, 유경희, 유기수, 유덕중, 유동립, 유동명, 유두선, 유라이언, 유미경, 유봉환, 유삼환, 유상대, 유석열, 유선, 유선희, 유승식, 유승훈, 유시우, 유연화, 유영숙, 유영택, 유완형, 유은영, 유은주, 유일형, 유재순, 유정길, 유정수, 유정향, 유주형, 유준모, 유준호, 유지남, 유철웅, 유혜중, 유현목, 유현철, 유효근, 육지숙, 윤가영, 윤경란, 윤경연, 윤경원, 윤경효, 윤금주, 윤기성, 윤기자, 윤기출, 윤길자, 윤명숙, 윤명희, 윤미경, 윤미연, 윤병섭, 윤복남, 윤상숙, 윤상식, 윤석빈, 윤석인, 윤석훈, 윤성노, 윤성민, 윤성실, 윤성용, 윤성향, 윤세리, 윤소영, 윤수영, 윤수정, 윤여정, 윤영란, 윤영준, 윤용석, 윤용태, 윤유경, 윤유희, 윤은주, 윤인애, 윤인희, 윤일송, 윤재은, 윤재환, 윤정선, 윤종관, 윤종만, 윤종배, 윤지운, 윤해란, 윤현경, 윤혜경, 윤혜란, 윤호숙, 윤호찬, 은인숙, 은주영, 은현영, 은현영, 이가운, 이강민, 이강식, 이강주, 이강현, 이건우, 이경돈, 이경림, 이경미, 이경민, 이경석, 이경숙, 이경애, 이경연, 이경임, 이경진, 이경호, 이경화, 이경희, 이계정, 이고구마, 이광수, 이광열, 이광호, 이국주, 이권재, 이규빈, 이규창, 이규홍, 이근중, 이근향, 이금순, 이기백, 이기범, 이기세, 이기우, 이기혁, 이남동, 이남희, 이다희, 이도진, 이도현, 이돈선, 이동관, 이동소, 이동수, 이동숙, 이동식, 이동열, 이동욱, 이동욱, 이동찬, 이동형, 이동호, 이동훈, 이록수, 이름, 이만우, 이명선, 이명신, 이명욱, 이명희, 이무한, 이문선, 이문화, 이문희, 이미경, 이미라, 이미령, 이미선, 이미숙, 이미순, 이미애, 이미현, 이민정, 이민주, 이바다, 이병기, 이병렬, 이병수, 이병현, 이복순, 이봉대, 이봉도, 이봉의, 이삼수, 이상국, 이상률, 이상명, 이상목, 이상식, 이상윤, 이상철, 이상조, 이상주, 이상철, 이상춘, 이상호, 이새샘, 이서영, 이서윤, 이서은, 이서인, 이석구, 이석미, 이선경, 이선아, 이선우, 이선자, 이선화, 이선희, 이성수, 이성주, 이성진, 이성희, 이세걸, 이세빈, 이소령, 이소민, 이소영, 이소정, 이소희, 이송희, 이수경, 이수란, 이수중, 이수진, 이수현, 이숙빈, 이숙영, 이순미, 이순옥, 이순주, 이슬, 이슬기, 이승덕, 이승락, 이승복, 이승아, 이승원, 이승주, 이승준, 이승진, 이승철, 이승태, 이승현, 이승현, 이승호, 이승훈, 이승휴, 이시우, 이시재, 이안택, 이재자, 이양연, 이연경, 이연규, 이연수, 이연욱, 이영경, 이영민, 이영범, 이영아, 이영열, 이영욱, 이영우, 이영일, 이영자, 이영찬, 이영천, 이영하, 이영희, 이예성, 이예신, 이예은, 이예인, 이오늘, 이옥경, 이옥수, 이옥숙, 이왈영, 이용기, 이용길, 이용원, 이용진, 이용철, 이원명, 이원빈, 이원열, 이원영, 이원정, 이원진, 이유평, 이유평, 이유평, 이윤상, 이윤숙, 이윤심, 이윤정, 이윤진, 이윤하, 이은영, 이은옥, 이은정, 이은주, 이은휴, 이은희, 이을재, 이의섭, 이인규, 이인수, 이인숙, 이인욱, 이일호, 이장목, 이장원, 이재경, 이재민, 이재복, 이재선, 이재원, 이재월, 이재철, 이재호, 이재환, 이재훈, 이재희, 이정경, 이정곤, 이정규, 이정근, 이정미, 이정민, 이정부, 이정숙, 이정아, 이정은, 이정임, 이정현, 이정혜, 이정훈, 이정희, 이조은, 이종고, 이종국, 이종길, 이종란, 이종량, 이종부, 이종상, 이종수, 이종화, 이종희, 이주인, 이주한, 이주호, 이주훈, 이준성, 이준혁, 이준호, 이지연, 이지영, 이지용, 이지윤, 이지은, 이지현, 이지후, 이지훈, 이지희, 이진구, 이진규, 이진생, 이진선, 이진수, 이진영, 이진희, 이창남, 이창민, 이창준, 이창호, 이창훈, 이창희, 이채린, 이채연, 이채우, 이채훈, 이철수, 이철우, 이철은, 이춘식, 이춘화, 이춘재, 이태민, 이태영, 이태욱, 이태일, 이태진, 이태호, 이태훈, 이태희, 이평호, 이필순, 이하진, 이한열, 이항근, 이해석, 이행자, 이향기, 이현일, 이현기, 이현민, 이현성, 이현숙, 이현아, 이현이, 이현정, 이현재, 이현주, 이형숙, 이혜리, 이혜미, 이혜민, 이혜원, 이혜정, 이혜준, 이혜현, 이호제, 이호준, 이화영, 이화자, 이희경, 이희선, 이희순, 이희창, 임경규, 임경택, 임규빈, 임근영, 임동국, 임미덕,

임방호, 임복희, 임성국, 임성택, 임소진, 임순자, 임영래, 임영희, 임운국, 임윤아, 임인숙, 임계혁, 임전남, 임정은, 임정택, 임정희, 임종길, 임준호, 임지성, 임진수, 임진아, 임진이, 임찬양, 임창숙, 임창우, 임춘섭, 임한민, 임현지, 임형숙, 임환, 임홍용, 임희숙, 장경미, 장경심, 장경태, 장경희, 장계석, 장명은, 장명호, 장미애, 장민서, 장백, 장병권, 장병택, 장선, 장소연, 장소화, 장수진, 장순복, 장순향, 장승균, 장시우, 장예라, 장원, 장은돈, 장은중, 장의동, 장일수, 장재만, 장재훈, 장정은, 장정학, 장재홍, 장종건, 장지은, 장진, 장진순, 장철일, 장현철, 전강진, 전건, 전광운, 전남순, 전대환, 전명희, 전미숙, 전미영, 전민, 전민규, 전병욱, 전병준, 전병철, 전봉희, 전서영, 전성현, 전승희, 전영진, 전은, 전은옥, 전인숙, 전지윤, 전태준, 전해동, 전희섭, 정갑수, 정강자, 정강주, 정경문, 정국면, 정국현, 정글, 정금복, 정금봉, 정금순, 정길호, 정나위, 정다솔, 정다운, 정대규, 정대철, 정덕, 정도영, 정동곤, 정동조, 정동준, 정만교, 정만진, 정명근, 정명희, 정무영, 정무진, 정문수, 정미란, 정미영, 정민정, 정민희, 정방, 정병영, 정병욱, 정병진, 정보연, 정보영, 정상기, 정석완, 정석호, 정선덕, 정설경, 정성진, 정성철, 정성환, 정세경, 정세빈, 정세운, 정수민, 정수영, 정숙희, 정순덕, 정순도, 정순영, 정승희, 정시은, 정애, 정연순, 정영숙, 정영우, 정영훈, 정예름, 정용욱, 정용재, 정원석, 정원숙, 정유욱, 정윤정, 정윤주, 정윤희, 정윤희, 정은석, 정은주, 정의학, 정이균, 정인숙, 정인채, 정일문, 정일식, 정장식, 정재순, 정재윤, 정정택, 정정희, 정종건, 정종화, 정주영, 정주진, 정준우, 정준화, 정진권, 정진남, 정진빈, 정진우, 정찬신, 정창욱, 정철, 정철수, 정철환, 정하준, 정행, 정혁, 정현근, 정현덕, 정현선, 정현정, 정혜실, 정혜원, 정혜주, 정후교, 정훈용, 정희, 조강현, 조강훈, 조경민, 조경순, 조경애, 조경자, 조규환, 조급자, 조남경, 조덕호, 조동현, 조명순, 조무규, 조미령, 조민희, 조병구, 조분순, 조상우, 조선영, 조성대, 조성래, 조성신, 조성애, 조성재, 조성지, 조성철, 조성호, 조송자, 조수용, 조순애, 조승형, 조아라, 조아름, 조안나, 조연우, 조영수, 조영희, 조용걸, 조용현, 조용휘, 조옥제, 조운서, 조은오, 조은채, 조이선, 조인숙, 조일근, 조일영, 조재연, 조재현, 조정선, 조정아, 조정웅, 조종규, 조종우, 조창성, 조철수, 조철호, 조하빈, 조항규, 조현수, 조현숙, 조현실, 조형준, 조혜경, 조혜은, 조효동, 조휘영, 주경선, 주경심, 주기철, 주민정, 주보경, 주소은, 주운섭, 주재형, 주창환, 지광숙, 지승환, 지용길, 진성민, 진소정, 진영수, 쭈야, 차금희, 차민경, 차준원, 차혜경, 차혜란, 채권병, 채기훈, 채미선, 채성길, 채수미, 채영재, 채옥희, 천현주, 천혜원, 청우미, 최현모, 최강주, 최경숙, 최경은, 최경희, 최광수, 최광일, 최규민, 최규선, 최기인, 최기자, 최길, 최낙성, 최대엽, 최동선, 최동혁, 최만섭, 최명애, 최미란, 최미숙, 최미순, 최미영, 최미화, 최민석, 최민솔, 최민숙, 최민재, 최병현, 최병호, 최복례, 최산, 최상욱, 최석용, 최선재, 최성기, 최성락, 최성주, 최수연, 최수경, 최승엽, 최양순, 최영복, 최영숙, 최영애, 최예지, 최옥빛, 최용기, 최용석, 최우진, 최원라, 최원석, 최원혁, 최유림, 최윤정, 최윤희, 최은계, 최은숙, 최은애, 최은철, 최은희, 최이삭, 최인호, 최장환, 최재혁, 최재호, 최점순, 최정규, 최정운, 최정휴, 최종문, 최종삼, 최종원, 최준혁, 최준호, 최지나, 최지연, 최지영, 최지현, 최진경, 최진희, 최창우, 최철민, 최태규, 최태영, 최태욱, 최한길, 최항국, 최혜창, 최현모, 최현미, 최현진, 최혜미, 최홍식, 최환금, 최희신, 최희정, 최희진, 추승연, 추연태, 추영배, 태진, 편창순, 표경라, 하급자, 하민호, 하상욱, 하성림, 하오태, 하은숙, 하정은, 하진경, 하형우, 한강희, 한경욱, 한동수, 한동훈, 한명근, 한명우, 한명희, 한무현, 한변진, 한빛샘, 한상무, 한상욱, 한상일, 한상희, 한성희, 한수경, 한순동, 한순희, 한승국, 한애주, 한양순, 한영일, 한용석, 한윤경, 한윤정, 한음식, 한장순, 한재영, 한진원, 한창완, 한철희, 한향자, 한현호, 한형갑, 한효림, 한효주, 한희숙, 한희정, 함경민, 함소은, 허나운, 허석주, 허선영, 허수빈, 허재연, 허정규, 허정일, 허진경, 허혜숙, 허혜정, 허휴, 현경원, 현석준, 현준희, 홍기원, 홍명희, 홍상연, 홍석화, 홍선애, 홍선희, 홍성권, 홍성원, 홍소라, 홍수정, 홍순원, 홍승범, 홍승혜, 홍영미, 홍원표, 홍윤하, 홍의연, 홍인교, 홍인표, 홍인화, 홍정호, 홍정훈, 홍종연, 홍지탁, 홍진기, 홍진욱, 홍찬선, 홍혜림, 환건정, 황규돈, 황규은, 황나래, 황민선, 황민택, 황병준, 황보미, 황성용, 황성현, 황성훈, 황수영, 황승현, 황영권, 황영대, 황영희, 황의술, 황의영, 황인란, 황인성, 황인창, 황재순, 황점원, 황정윤, 황정훈, 황정희, 황주희, 황지영, 황효성, 훈창 (이상 2201명, 가나다 순)

**1600만 풋볼의 열망,
「100대 풋볼개혁과제」**

순서

1. 취지와 경과

2. 촛불개혁과제(10대 분야 100대 과제)

1) 개요

2) 해설

- (1) 재벌체제 개혁
- (2) 공안통치기구 개혁
- (3) 정치·선거제도 개혁
- (4) 좋은 일자리·노동기본권
- (5) 사회복지·사회공공성 강화, 생존권 보장
- (6) 성평등 포함 평등권 실현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 (7)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 (8) 위험사회 구조 개혁
- (9) 교육불평등 개혁과 교육공공성 강화
- (10) 언론개혁과 자유권 보장

붙임. 6대 긴급현안

1. 취지와 경과

- 2016년 10월 29일 첫 번째 촛불이후 쉽 없이 달려온 1600만 촛불시민은 마침내 박근혜를 파면시켰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무능을 넘어 국정을 농단했던 대통령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탄핵시켰다. 촛불 시민과 주권자가 만들어 낸 낸 역사다.
- 촛불시민은 박근혜 개인의 파면을 넘어,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대개혁·국가대개조를 요구한다. 1600만 촛불시민의 개혁 열망을 체계화하여, 박근혜정권즉각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10대 촛불개혁과제」를 발표한다.
- 「촛불개혁과제」는 「재벌체제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공공성, 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 안전과 환경」, 「교육불평등 개혁·교육 공공성 강화」,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필수적인 10대 분야 100대 개혁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촛불개혁과제」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촛불투쟁의 연장선에서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촛불개혁과제」가 진지하게 공론화되기를 바란다.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민의를 거스르고 개혁을 거부하는 낡은 정당들이 얻을 것은 주권자의 냉엄한 심판 외에는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 촛불투쟁 성과로 치러진 대선으로 출범한 새 정부는 촛불민심을 무겁게 받들어 즉각적인 촛불개혁에 나서야 한다.
- 퇴진행동은 박근혜 개인의 파면을 넘어, 적폐와 부역자, 재벌체제를 청산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길 희망한다. 광장의 촛불은 정치, 일터, 현장 등 우리 일상의 촛불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 1600만 촛불과 「촛불개혁과제」가 한국 민주주의가 가보지 못한 긴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한다.

2. 촛불개혁과제(10대 분야 100대 과제)

1) 개요

	세부 개혁 과제
재벌체제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재용 등 재벌 총수 구속 ② 재벌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③ 불법 탈법, 순환출자 등에 의한 총수일족의 부당 경영개입금지 입법 ④ 법인세 인상 ⑤ 사내유보금 사회환수 ⑥ 재벌의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불법파견·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⑦ 재벌의 산별교섭·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⑧ 골목상권 파괴하는 유통재벌 규제와 중소기업 살리기 입법 ⑨ 대리점/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안통치기구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정원 개혁] 수사권의 분리 및 이관 ② [국정원 개혁] 국내 정치 개입 금지와 수사권 폐지 ③ [국정원 개혁]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④ [국정원 개혁]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⑤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⑥ [검찰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⑦ [검찰 개혁]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인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⑧ [검찰 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⑨ [검찰 개혁] 검사장 직선제 및 주민소환제 입법안 ⑩ [경찰 개혁] 수사·치안경찰을 이원화를 통한 분리 ⑪ [경찰 개혁] 국가 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화 ⑫ [경찰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시민참여를 통한 정상적 운영 ⑬ [사법부 개혁] 재판관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 ⑭ [행정부 개혁] 감사원 감사기능, 독립성 강화 및 국회 이관 ⑮ [행정부 개혁]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정치·선거제도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8세 선거권 보장 ②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③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④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세부 개혁 과제
	⑥ 국민발안제 도입
좋은일자리· 노동기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법 개정 ② 상사·지속업무 정규직화 ③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④ 노동시간 단축·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⑤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⑥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노동3권’ 보장 ⑦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금지 ⑧ 해고요건 강화 ⑨ 고령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노동기본권 보장 ⑩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복지· 공공성· 생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②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 확충 ③ 주거권 보장 ④ 이동 권리보장 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불안 해소 ⑥ 청년 실업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⑦ 건강보험후자 20조로 의료비인하, 어린이·노인부터 무상의료 ⑧ 공공병원 확충 및 비영리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⑨ 과잉진료규제와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중단 ⑩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와 기업 책임 강화로 보장성 강화 ⑪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규직 의료인력 확보 및 외주화 중단 ⑫ 밥쌀수입중단·쌀값 보장 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 ⑭ 개방농정 철폐와 식량자급률 제고 ⑮ 행정대집행법 재개정과 무분별한 강제철거 중단 ⑯ 노점감축정책 중단과 노점상 생존권 보장 ⑰ 선대책 후철거로 순환식 재개발 정착
성평등 포함 평 등권 실현과 사 회적 소수자 권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평등권 실현 ② 성별 임금격차 해소 ③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④ 남성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에 따른 복지체계 개편 ⑤ 성소수자 차별 해소
남북관계·	① 남북당국 회담 포함한 대화 재개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복원

	세부 개혁 과제
외교안보정책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복원 ③ 남북 간 합의 재확인과 이행 ④ 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 중단 ⑤ ‘위안부’ 굴욕 합의 무효, 재협상 및 한일과거사 해결 ⑥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⑦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⑧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통제권 강화 ⑨ 외교, 국방 분야 정보공개 강화 통한 국민 알권리 및 주권 보장 ⑩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등 국방개혁 ⑪ 미국 요구에 따른 무분별한 해외파병 반대
위험사회 구조 개혁: 안전과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② 4대강 16개 보 수문 상시 개방 및 책임자 청문회 ③ 위험 요인들에 대한 성역 없는 정보공개 ④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의 금지 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⑥ 중대재해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⑦ 규제프리존법 등 안전규제완화법안 폐기 ⑧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⑨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철도 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⑩ GMO(유전자변형식품) 원전표시제 실현과 방사능-GMO 없는 안전급식 ⑪ 미세먼지(PM 2.5)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3단계 (연 평균 15μg/m³)으로 강화 ⑫ 인간 동물 자연에 고도의 위험을 부과하는 공장식 축산정책 폐지
교육불평등개혁·교육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력차별철폐(고용/승진/임금차별금지)·학벌폐지(학교평준화) ②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③ 특권경쟁교육 폐지 및 평등교육 실현(초중등교육법 개정) ④ 고등교육예산 GDP 대비 1% 이상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⑤ 입시 폐지·대학 평준화 및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구성 ⑥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및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⑦ 교육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 실현 ⑧ 교수·교사확보를 정규직으로 100% 확보 의무화 ⑨ 시간강사법폐지와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언론개혁과 자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언론장악방지 4법 개정 ② 집회시위자유 확대 ③ 시민사찰-블랙리스트 금지 입법

	세부 개혁 과제
	④ 국가보안법 폐지 ⑤ 테러방지법 폐지 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⑦ 양심수 전원 석방

2) 해설

(1) 재벌체제 개혁

□ 당면 요구

① 이재용 등 재벌 총수 구속

- 삼성 이재용은 경영세습을 위해 박근혜 일당에게 430억 가량의 뇌물을 바치고 국민연금기금을 동원한 결과 국민의 노후가 달린 연금기금에 6천억 손실을 끼친 반면 이재용과 삼성 총수일가는 3조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 이재용은 자신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뇌물을 주고 대통령으로서의 권력을 매수한 자로서 뇌물죄에 따라 구속, 처벌되어야 하며, 이재용 등이 취한 이익은 뇌물공여행위라는 중대범죄에 의한 범죄이익으로서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되어야 한다.
- 현대 정몽구는 박근혜에게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는 민원을 접수하고 박근혜는 현대차의 재단 기금 출연과 최순실 특혜 제공을 전후로 5대 노동관련법(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을 추진하였던 정확히 드러난바, 마찬가지로 뇌물죄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 SK는 박근혜에게 최태원의 사면과 기존 SK위커힐 면세점 사업면허 심사 탈락 이후 추가 면세점 설치 민원을 접수하고 그 대가로 재단 기금을 출연한 사실, CJ는 이재현의 사면과 문화계 각종 이권 사업의 주도적 개입 민원을 접수하고 그 대가로 재단 기금을 출연한 사실, 롯데는 경영권 세습 다툼과정에서 밝혀진 그룹 경영 불투명성, 세금탈루 무마와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사업 추진, 기존 롯데잠실 면세점 사업면허 심사 탈락 이후 추가 면세점 설치 민원을 접수하고 그 대가로 재단 기금을 출연한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이들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진들을 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 엄벌해야 한다.

② 재벌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 이재용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으로 몰수되어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 고 정하고 있다. 중대범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가 정하고 있는데, 별표 제1호 (가)목은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를 정하고 있다. 이에 이재용은 제133조, 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처벌되어야 하므로, 동법이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 이재용은 중대범죄인 뇌물공여에 의하여 국민연금이 이 사건 합병에서 찬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바, 수사결과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그 결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죄를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뇌물공여와 관련된 이익이라 볼 수 있다. 또 그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고, 뇌물공여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할 수 없

었다는 점이 인정될 것이므로 뇌물공여행위와 이재용이 합병을 통해 취득한 이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부당한 합병비율로 이재용 등 총수 일가는 3조 1,271억 원의 이익을 얻은바, 이는 뇌물공여행위라는 중대범죄에 의하여 재산으로서 전액 몰수 또는 추징되어야 할 것이다.

③ 불법·탈법, 순환출자 등에 의한 총수일족의 부당 경영개입금지 입법

- 삼성·현대·SK·LG·롯데 등 재벌들은 불법·탈법적인 방식으로 부를 증여, 상속하고 경영권을 자자손손 세습하여 한국경제를 망가뜨렸다. 특히 이번 ‘박근혜-재벌 게이트’의 핵심이라 할 이재용은 3대 세습을 위해 대통령을 뇌물로 매수하여 국민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에까지 마수를 뻗치는 경악을 금치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사건, 2002년 대선개입 사건, 2007년 대선후보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삼성은 그야말로 주기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며 헌정을 유린해왔다. 모두 경영권 승계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 이번 게이트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삼성그룹 총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유전무죄를 삼성만큼 제대로 보여준 사례가 없다. 반드시 이재용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
- 또한 재벌의 불법·탈법 경영권 세습을 방지하고 총수일가의 부당한 기업지배와 전횡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미루어져왔던 상법(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자사주 규제 등) 및 공정거래법(과거 순환출자 해소 등)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 재벌 공간 열어라

④ 법인세 인상

-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 정책으로 임기 5년간 25조원의 세수가 덜 걷힌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효과는 재벌 대기업에 편중되었다. 반대로 말하면 재벌이 져야 할 조세의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한 셈이다. 법인세 감면내역의 주요 항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세감면제도는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법인세율을 낮추고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벌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여 재벌 대기업에 집중되는 조세 특혜를 없애야 한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각종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도 필요하다.
- 이와 함께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우선적 조치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나아가 과세표준 초과 구간을 통한 법인세율 상향과 재벌들의 실효세율을 올리기 위해 최저한세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 법인세 인상 등 재벌에게 제대로 된 조세 책임을 물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일자리 예산과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여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⑤ 사내유보금 사회환수

-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부문 소

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70.6%에서 62.3%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16.6%에서 23.3%로 높아졌다. 기업들의 소득이 사회로 환류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과 가계소득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 재벌의 초과이익 또는 과도한 사내유보금은 생산적 투자와 고용촉진 등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를 사회로 환류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격차 확대, 저임금 나쁜 일자리 확산, 노동시장 양극화 확산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양극화 및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재벌의 사내유보금을 사회로 환수할 수 있는 과세방안을 포함해서 재벌이 독식한 부를 생산적 투자, 고용 확대, 임금 인상, 복지 증대 등으로 환수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지만, 이는 대주주의 배당소득만 늘려줄 뿐 생산적 투자 및 고용증대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기업소득을 생산적 투자·고용·임금 등 사회적으로 선순환하기 위한 세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자소득·배당소득·주식소득·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목적 벗어난 자산운용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외에도 추가 과세 등 법인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 진짜 사장 나와라

⑥ 재벌의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불법파견·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 재벌 대기업은 지불 능력이 충분함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이 되고 있다. 2016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3,464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74만 명으로 통계청 조사(247만 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40.1%로 통계청 조사(13.5%)보다 3배 높다.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5%인데 1만 인 이상 거대기업은 42.2%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3.7%인데 1만 인 이상 거대기업은 33.0%이다.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또한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8.0%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6%)이 직접고용 비정규직(7.4%)보다 4배 많다. 특히 현대중공업, GS, 포스코 그룹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 이처럼 재벌 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이라는 점에서, 재벌 대기업에서부터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고,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재벌 계열사 사내하청 대부분이 상시·지속적 일자리이자 불법파견이라는 점에서, 이들 일자리 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⑦ 재벌의 산별교섭·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 산별교섭이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내 대표적인 재벌그룹들은 산별교섭 참여를 거부하고, 오히려 산별교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재벌 대기업들의 산별교섭 참여는 수직적 원하청구조에서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산별교섭에

는 재벌 원청과 부품사 등 하청업체가 같이 참여하므로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의 전제인 재벌 원청과 하청간의 불공정 거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 또한 무분별한 비정규직 확산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벌 대기업은 하청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재벌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및 준수는 재벌의 사용자 책임을 이행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최근 미국의 노동관계위원회는 브라우닝 페리스 결정에서 “가맹점이나 하청기업 등에 간접고용된 노동자들도 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 문제가 심각하며, 일 자리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섭권 보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벌 대기업은 하청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인 단결권 행사를 가로막지 말아야 하며, 노동조합 결성 이후 ‘진짜 사장’ 원청으로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 ‘바지 사장’을 앞세워 교섭을 해태하는 전근대적 행태를 벗어나야 한다. 나아가 손배가압류 등 금전적으로 노조활동을 억제하고, 어용노조를 앞세워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도 근절되어야 한다.
- 단체협약 효력 확장은 노동조건 상향평준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단 중 하나다. 노동법 개정을 통해 단체협약의 일반적 효력 확장을 추구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재벌이 최소한의 사용자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사업장 단체협약을 동일 기업집단 내 사내하청 노동자에게는 동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슈퍼 갑질 그만둬

⑧ 골목상권 파괴하는 유통재벌 규제와 중소기업 살리기 입법

- 2014년 12월 기준 신세계(이마트), 롯데, 현대 등 재벌들의 대형마트 508개, 편의점 3만개, SSM 9천개, 아울렛과 복합쇼핑몰(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대형외식프랜차이즈, 영화관과 엔터테인먼트 시설, 호텔 등으로 구성)이 58개 출점해 있다. 2016년 재벌복합쇼핑몰은 72개까지 출점을 하고 있어서 향후 시장독과점이 우려되고 있다. 보통 대형마트(3000㎡)의 10배~20배 이상 되는 초대형복합쇼핑몰은 반경 10~15km 지역상권 내 1개 점포당 소상공인들의 평균매출을 절반(46.5%이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가령 음식업 같은 특정 업종의 경우는 79%이상 매출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재벌 3사들은 출점과정에서 경제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반드시 검토 받아야할 심사과정 등을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 부실하게 적용받고 있다. 재벌 측의 일방적인 “지역고용인력 창출 및 지방세수 증가 등 장밋빛 경제유발효과 보고서”를 토대로 승인을 내주면서, 오히려 부동산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에 외국투기자본을 통한 수익계약과 헐값에 토지매입, 법인이 있는 외지로의 법인세 유출 등으로 지역경제는 피해입고, 재벌업체들만 배불리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나 부천, 하남, 부산 등 지방에서 신세계와 롯데는 온갖 불법·특혜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 한편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후 재벌 대기업들은 2007~2011년 사이 652개의 신규계열사를 확장하면서 제조업 이외 유통서비스업 분야에 76% 정도가 진출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음식, 숙박, 도소매업 등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에 롯데(1위)와 GS(2위), 신세계(4위)등 재벌 대기업들이 집중

진출하였다. 제조, 유통 및 서비스업 관련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되고 있지만,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2014년 2월) 평균 2~3년 걸리는 적합업종 선정과정이 문제라는 의견이 72.5%, 적합업종 선정이후에 대기업의 위반행위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식품제조 경우 50%, 동반위의 모호한 적합업종 권고 내용이 문제라는 의견도 63.6%이상 나온다.

- 이에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재벌복합쇼핑몰 출점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재벌 대기업의 무한확장으로 중소기업 시장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⑨ 대리점/프랜차이즈 등 재벌 대기업의 갑질 근절

- 골목상권의 빵집, 커피집,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편의점등 다양한 업종들에 걸쳐서 프랜차이즈 계약형태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2015년 현재 20만8천개의 가맹점이 있다). 그러나 가맹사업을 하는 본사들의 출점위주정책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의 식자재공급 등 일방적인 “갑” 질 횡포로 “을” 들은 수익을 수탈당하고 있다.
- 편의점을 비롯한 많은 을들의 피해사례를 통해 그동안 불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하고 가맹본사에게는 유리한 물류독점 문제, 계약해지 규약과 계약갱신청구의 10년 제한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집단자치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않고 있다.
- 최근 서울과 경기도 등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방정부 내에 “불공정상담센터” 를 개설하고 불공정거래 피해자들을 직접 상담하고, 공정위신고를 도와주는 등 필요한 법적지원을 적절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공정위에 집중되어 있는 조사권과 기소독점권에 대해 필요시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다.
- 계약갱신 청구권 보호, 과도한 인테리어 청구 금지, 대리점 본사 관련 대기업 위주로만 규율하는 협소함 탈피, 대리점주 단체결성과 공정거래를 가능케 하는 교섭요구권의 보장 등이 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불공정한 갑을 횡포 방지와 공정거래를 위한 가맹사업,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시민-노동자 안전 보장하라

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로 접수된 사람이 5천 명을 넘는다. 그 중 사망자는 1,092명에 달한다. 이 중에서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확인해 준 사람은 258명뿐이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유독성 화학물질에 관한 안정성 확인,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는 것과 함께 잘못된 기업에 대한 처벌의 방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넘어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추가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데에는 분명 적은 배상액에도 원인이 있다. 이 같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어야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 영국과 미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었고, 대표적으로는 199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금속 배출로 수질을 오염시킨 전력회사 PG&E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은 실화를

영화로 만든 ‘에린 브로코비치’를 통해서도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기업의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

(2) 공안통치기구 개혁

□ 국정원 개혁 : 국내 정치 원칙적 개입 금지

① 수사권의 분리 및 이관

-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공안사건의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사방첩, 국제범죄 등에 대해서는 관련정보를 수집해 검찰 및 경찰을 지원하고 있다.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국정원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근원이 된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 헌법재판소도 이미 소수의견을 통해 “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는 이를 폐지하여 그의 업무를 내무부와 법무부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안전기획부를 존치시키려면 그의 담당 업무를 오로지 정보수집에 한정하고 보안업무나 범죄수사권 등을 완전히 배제시켜 권력남용 및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든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하나로 하여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변정수 재판관 소수의견). 따라서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은 범죄수사에 필요하다면 수집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내 정치 개입 금지와 수사권 폐지

- 국정원의 정치개입 및 공안통치체제는 국정원이 수사권과 함께 국내보안정보의 수집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에 의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도 국가정보원의 국내외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법상으로는 “국내보안정보”라고 하여 범위가 한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복적결이라는 미명 하에 국정원은 사실상 모든 정보수집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하고 공작정치를 주도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까지 휘두르면서 간첩조작 등 적법절차 유린과 인권침해가 만연하였다. 따라서 국정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은 폐지되어야 하며,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수사하고 정보를 수집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③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가정보원법과 보안업무규정 등에 의해 국정원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 수행하며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① 국가 기본 정보정책의 수립, ② 국가 정보의 중·장기 판단, ③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의 작성, ④ 국가 보안방책의 수립, ⑤ 정보예산의 편성, ⑥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

립(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규정 제4조) 등의 기획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통일부와 외무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다른 정부부처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군림하면서 공안통치를 주도할 수 있었다.

- 국가기관 간의 정보의 상호교환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국정원이 담당해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정보기관이 기획·조정권한을 행사할 경우 그 활동 특성상 조정의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정보 조정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해질뿐더러 정보독점의 폐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하고, 보안업무의 기획·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 또는 해당 부처(예를 들어, 사이버보안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④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 국정원의 예산과 인력운용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어 사실상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정보기관이라 하더라도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의 독점 때문에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국내 정치에 쉽게 개입함으로써 독점적 권력을 자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현재 국정원을 통제해야 할 국회정보위원회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이를 극복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설치하고 정보기관의 자료제출의무를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

□ 검찰 개혁: 정치검찰 방지

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검찰이 이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한 사례가 많다. 이에 권력형 비리와 권력 오남용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같은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공수처 신설은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부패척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를 위하여 검찰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수사기구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다. 특히 처장의 임명은 정치권력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조직과 예산의 독립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⑥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찰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한 것을 개혁해야 한다. 검

찰권력의 분산은 기존의 검찰권력을 그대로 놓아둔 채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이 가진 거대한 권력을 쪼개어 나누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 보충적 수사권)만 갖는 형태의 권력분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원칙적인 개혁방향임에 틀림없다.

- 다만,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어 현행 헌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경찰은 검찰보다 더욱 청와대 등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찰권력의 분산과 민주주의적 통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한, 경찰에게 전면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전제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경찰에 전속적인 수사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법치주의적 통제의 시스템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의 수사가 정치권력의 영향에 얼마나 취약한가는 지난 국정원 직원의 댓글달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발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둘째,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된다면 이번엔 경찰이 정보, 경비, 수사 등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보유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가 그것이다.

⑦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인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1997년 이래 검찰청법 제44조의2(검사의 파견금지 등)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친 후 다시 법무부가 검사로 임용해 검찰로 복귀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 청와대에 파견된 검사가 대통령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한 것인데, 편법으로 인하여 금지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많은 검사가 사직서를 낸 후 청와대에 근무했고, 이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임기를 마치고 다시 신규 임용 형식으로 검찰에 복귀하여 검찰 내 요직으로 재임용되었다.
- 따라서 청와대 비서실에 전직 검사를 임용하여 청와대가 검찰을 사실상 장악하고 공작정치에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개혁방안이 필요하다. 검사로 재직할 자는 퇴직 후 최소한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대통령실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실에 재직할 자는 향후 검사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⑧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 법무부 요직을 검사 파견으로 사실상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혁파해야 한다. 법무부는 순수하게 법무행정기관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기타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에 검사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법무부에 재직할 자는 향후 검사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
-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무부장관이 개별 사건의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권을 대리행사한다는 의미

에서만 그 제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 바, 기본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인 법무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맡기는 것이 매우 취약한 제도임은 분명하다.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대신에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담보하기 위한 통제제도로는 국민의 참여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⑨ 검사장 직선제 및 주민소환제 입법안

-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검찰 권력의 오남용 문제가 극심하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부실, 눈치보기 수사,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정부 비판 세력에 대한 표적 및 보복 수사, 재벌과 대기업 봐주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정치권력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정치검찰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며, 전국 단일의 피라미드형 검찰제도는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의 의사가 최하 말단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엄격한 위계형 구조이다. 검찰 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장악하는 구조를 바꾸고,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민주적 통제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검사장 직선제의 도입은 경찰권력에 대한 지방경찰제 시스템의 도입과 맞물려 경찰 및 검찰 권력의 지방분권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된다. 대검찰청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검찰청을 정책조정 및 감찰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립하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청와대-법무부장관-검찰총장-검사의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로 검찰조직이 청와대에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경찰 개혁

⑩ 수사-치안경찰을 이원화를 통한 분리

- 경찰은 사실상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어 민생치안과 밀접한 기관인 반면에, 치안정보 수집이라는 미명 하에 시민사회 진영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행하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공안기구 중 하나로 검찰 못지않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검찰보다 더욱 지배적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이처럼 청와대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권 외에도 정보수집, 경비, 교통 등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 개혁의 방향은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적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어야 한다.
- 경찰권한 중 수사권은 별도의 ‘수사청(가칭)’의 업무로 하고, 수사외 업무 외에 정보, 교통, 방범 등의 업무는 일반경찰(치안경찰)의 소관업무로 하고, 수사청과 일반경찰청 조직을 분리하여 권력을 분산하여야 한다.

⑪ 국가 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화

- 경찰권한 중 수사권은 별도의 “수사청(가칭)”으로 분리하고, 수사청은 국가단위 조직과 지방

자치경찰조직으로 이원화한다. 국가단위의 수사청은 조직범죄·마약범죄·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범죄사건 등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행사하며,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권은 지방수사청에 관할하도록 한다.

- 수사 외의 정보·경비·교통·방범 등의 업무는 “지방경찰청”의 소관업무로 하여, 완전한 지방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결국 국가조직으로서 경찰은 “국가수사청(가칭)”만 존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수사청”과 “지방경찰청”의 조직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⑫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시민참여를 통한 정상적 운영

- 경찰권력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민 독립기구인 “경찰위원회”를 국가 및 각 지자체 별로 수사청·경찰청에 대응하여 도입하도록 한다(영국식 자치경찰제 모델). 경찰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찰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시민참여 독립기구로 구성한다.
-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에 대한 임면권, 경찰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 훈령제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경찰이 시민밀착형 경찰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 사법부 개혁

⑬ 재판관 인적구성의 다양성 강화

-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로 대법원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역대 대법관들은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 일색으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요구와는 상반된 구성이다. 이처럼 대법원의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이 법조직역에 치우쳐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추천을 하지 못하는데다가, 이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영향력도 과도하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와 이념을 수호하고 국민, 특히 소수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러나 역대 헌법재판관의 출신 직역 역시 고위직 판검사 출신으로 획일적이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추천위원 중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구성원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추천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내용, 선거과정에서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대법원장이 추천 과정에서 출석하거나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추천 과정의 민주화와 투명성 강화를 통하여 대법관 구성의 인적 다양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구 요건을 삭제하여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 행정부 개혁: 행정부의 부패방지과 견제 강화

⑭ 감사원 감사기능, 독립성 강화 및 국회 이관

- 감사원은 국정의 부패방지과 사정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헌법에서 독립된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거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도 숨방망이 처분을 내리거나 봐주기 감사를 진행하는 등 감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권에 따라 다른 감사결과를 내놓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
- 감사원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위원 활동 보장을 위해 대통령에 예속적인 감사위원 임명절차에 국회가 간여하도록 개편하고(국회의 추천권 보장), 감사원 기능 중 적어도 회계감사는 국회로 이관해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을 개혁하여야 한다.

⑮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 고(故)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드러난 공작정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과 예산집행을 입법부가 견제하지 못하고, 행정부가 사법부 구성 및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능을 실질화하고 강화하여, 권력분립과 감시가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 법률 내용과 취지에 위반되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등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등 시행령 제정과 개정시 국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하여야 한다.

(3) 정치·선거제도 개혁

□ 선거제도

① 18세 선거권 보장

-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은 2005년에 19세로 하향 조정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낮아지는 추세이다. 일본이 2015년 6월, 18세로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한다. 특히 입시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은 최근 들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18세 청년들은 이러한 현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해당사자이다.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은 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치에 직접 반영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②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死票)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율이 크게 차이난다. 득표와 의석의 불일치로 인하여 국민의 의사는 대표자 선출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단순다수제에서 발생하는 사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해야 하지

만, 비례대표 의석의 수는 20대 국회의원 300석 중 47석에 불과하여 그 효과가 미약하다. 또한 청년과 여성, 중소기업, 노동자, 이주민 등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정치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사표(死票)를 없애고, 각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차지하여, 득표와 의석 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직능 대표성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도입하기 위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③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19대 대통령 선거부터 결선투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자, 각 정치세력간의 당당한 경쟁을 어렵게 했던 후보단일화 시도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길이며, 제 정치세력간의 협력과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다.
-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3미만의 지지를 받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전체 유권자 수 대비 득표수가 각각 32.6%, 31.97%, 30.52%에 불과했다. 이는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는 헌법 67조 3항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의 국민적 대표성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국민통합보다는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었고 정치발전은 지체되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④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 선거 시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 참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은 정치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조항을 통해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규제 일변도의 선거법과 선관위의 자의적인 단속, 검찰과 경찰의 부당한 기소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유권자 수난의 역사가 반복되었다.
- 선거운동기간 설정에 따른 선거운동 및 각종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현행 선거법 체계를 폐지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제외한 의견표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 또한 교사, 공무원, 공공부문, 협동조합, 청소년 등의 정당참여(당원) 금지 조항을 개정하고, 단순 정당가입 경력을 공무담임 또는 각종 정부위원회 자격 배제조항으로 적용하는 것을 개선하여 정치참여 등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여야 한다.

□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

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국민소환제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거나 부패행위를 저지른

경우 국민 청원에 의해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를 종료시키기 위해 투표에 부치는 제도다. 현재 ‘지방자치법’ 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의 소환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은 파면할 수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 응징과 상시 감시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 국민소환 대상자를 국회의원이나 지자체단체장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려는 의지의 표현으로 기득권세력의 권력독점을 타파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확장시킬 계기를 형성할 수 있다.

⑥ 국민발안제 도입

-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헌법이나 법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별도의 입법기관의 논의 없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식인 직접발안제와 입법기관의 논의를 거친 후 입법기관 표결하는 간접발안제가 있다. 또한 청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청원심사를 의무화하고 공론에 붙일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국민청원도 넓게는 국민이 직접 법을 발의한다고 할 수 있다. 통치권자의 권력남용을 막고,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 국민소환제와 함께 국민발안제에 대한 요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4) 좋은 일자리 · 노동기본권

① 최저임금 1만원 · 최저임금법 개정

- 최저임금은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 이라는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 ‘인간다운 생활보장’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비’ 를 주요하게 반영해야 마땅하다. 유엔사회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최저임금은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지출을 촉진하여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몰락’ 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 이는 침소봉대에 불과하다. 중소자영업자의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아닌 과당경쟁과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와 임대료 상승이다. 중소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여 지출을 증대하고 이것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고용감소와 실업증가, 소득불평등 심화를 극복 할 수 있는 해법으로도 유용하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을 개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 이라고 비판을 받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개선하는 등 최저임금결정구조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이 시급하다.

② 상시 · 지속업무 정규직화

-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년 8월 자료를 근거로 발표한 현재 비정규직은 임금노동자 전체 1,963만명의 44.5%에 해당하는 874만 명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이주노동자는 아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내하청 노동자는 별도 설문 문항이 없어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고,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으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인 1천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 비정규노동자의 고용불안정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201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가 2014년 8월 32.3%에서 2015년 8월 32.6%로 0.3%p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단기근속자 비중은 53.4%에서 54.6%로 1.2%p 증가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근속년수가 가장 짧은 ‘초단기근속’의 나라로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이다.
- 1천만을 훌쩍 넘은 비정규직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상시·지속업무에는 반드시 정규직 직접고용을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현재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출산·휴직 결원 대체 등 특수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유 제한이 필요하다.

③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우리 진짜 사장은 정몽구 회장, 따라서 현대차가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재벌과 원청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정부 또한 용역·도급·파견·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 간접고용의 반대편에는 아예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위탁계약을 체결해 노동자를 개인사업자처럼 둔갑시키는 특수고용 비정규직이 놓여 있다. 화물·덤프·레미콘 기사,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잘 알려진 사례인데, 정부와 자본은 이들의 노동자성 자체를 부정해 아예 노동조합 결성을 봉쇄해 버렸다. 임금과 노동조건을 교섭할 권리도, 산업재해 보상의 권리도 박탈되었다.
- 간접고용(파견·도급·하청·위탁 등) 비정규직의 ‘진짜 사장’은 하청 사업주가 아닌 원청 사업주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파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노조법 제2조 2항의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의 정의에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사내하도급의 원청사업주는 사용자로 간주), 해당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받는 노동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해당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해야 한다.
- 특수고용(화물·덤프·레미콘 기사, 대리운전·택배·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비정규직의 노동자성 인정 및 산재보험 전면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노동자로 명문화하고

그 외 추가로 단결권 보장 필요성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④ 노동시간 단축-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청년과 실업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삶과 노동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수단은 전 사회적 수준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 현재 정부·여당이 발의한 노동시간 연장 및 유연화 근로기준법 개악안 폐기, 휴일근로 연장근로 한도 포함,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례업종 제도 폐지, 하루 11시간-휴일 포함 35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교대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전사회적 수준에서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상임금을 정상화하여 왜곡된 임금구성을 바로잡고 소정근로 시간당 임금보다 헐값으로 취급된 초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제대로 받음으로써 장시간 노동 관행을 철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감대가 노동시간 단축 목표를 구체화하여 연간 1,800시간, 월 180시간, 주 52시간의 노동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초과노동 발생 시에 추가 채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의 저하나 임금체계 변경을 불허하는 등의 특별 입법이 필요하다.

⑤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재벌에게 정당한 조세 책임을 물어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복지도 강화하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에 직결되는 공공행정,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충이 시급하다.
- 한국은 공공부문의 고용규모가 매우 적은 편이다. 공공부문이 고용정책의 측면에서 실업 위협의 분산이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안정화 역할이나 사회정책의 측면에서 복지서비스의 공급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한국의 공공서비스 산업부문(전기·가스·수도업(D, E), 운수업(H),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의 취업자수 비중은 23.0%로 OECD 평균보다 7.3% 작으며 그 차이는 약 183만 개 일자리에 해당한다. 또 일반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취업자수 비중은 7.6%로 OECD 평균에 비해 13.7% 작으며, 그 차이는 약 343만 개 일자리에 해당한다.
- 공공투자, 공공서비스 획기적 확대와 생명안전 일자리 확충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

⑥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노동3권’ 보장

-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의 맹점과 정부·사용자의 노동탄압으로 노조 조직률이 십 수년째 10% 근방을 맴돌고 있다. 헌법 제 33조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을 복권함으로써, 모든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여 임금과 고용 등에 관한 노동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하나, 비정규직(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등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간접고용 원청사업주 사용자책임 인정 ▲공무원·교사·교수 노동기본권 보장 ▲사실상의 ‘노조설립허가제도’ 개선 ▲타임오프 제도 폐기·노사 자율 보장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동활동 탄압 금지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하나,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제도 폐기·자율교섭 보장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의무화 ▲공공부문 노정교섭 보장, 산별교섭 의무화 ▲산별협약 등 초기업단위 단체협약 효력 확장 ▲정리해고, 정부 정책 등에 관한 쟁의권 보장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 금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금지 ▲필수유지업무 조항 폐기·최소유지업무 신설 ▲쟁의행위 시 원청 대체인력 사용 금지 등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⑦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금지

- 박근혜 정부 기간에만 민주노총과 소속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활동(집회 등)에 대해서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5억 2천여만 원에 달하며,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을 합산하면 20억 원을 넘어섰다. 주로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집회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과 더불어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활동을 옥죄는 처벌조항과 쟁의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쟁의행위는 그 자체가 기본권의 행사인 동시에 헌법적 질서에서 예정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쟁의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원천적으로 배상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쟁의의 불법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무력화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노조법 제2조가 규정한 ‘노동쟁의’, 즉 “노·사간 임금·노동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에만 쟁의행위를 인정하고 있어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안, 민영화반대, 노동조건에 영향을 주는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함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파업을 불법화하고,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와 징계해고를 하고 있다.
- 이명박근혜 정부 기간엔 반노동정책에 편승하여 노동조합의 존재를 위협하고 간부 및 조합원의 생존권까지 박탈할 만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조합원 개인까지 손해배상 청구대상으로 하고, 노동조합활동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대상에서 선택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는 등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가압류 또한 제한하도록 노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⑧ 해고요건 강화

-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정리해고와 공권력투입의 악순환이 펼쳐지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삶터와 생명을 잃었다. 정리해고는 노동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오로지 사용자의 일방적 편이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노동자의 생존

권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념이 불명확하여 자의적으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어 왔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정리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일터에서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이나 인사제도 관리라는 명목으로 가학적 노무관리와 함께 정리해고를 우회하는 선제적 구조조정 수단이자 부당노동행위의 방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주화를 목적으로 한 희망퇴직이나, 이를 거부할 경우 사직을 종용하기 위한 대기발령, 교육훈련을 통한 별세우기, 기초질서 지키기를 핑계로 한 가학적 성과평가들이 만연하고 있다. 사용자로 하여금 법과 판례의 법리를 벗어나 사용자들에게 ‘맘대로 해고’를 허용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위헌·불법 행정지침인 ‘저성과 해고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⑨ 고령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노동기본권 보장

- 한국은 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동시에 노인빈곤율은 2013년 기준 48.1%로 OECD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노후생계를 보장할 사회보험과 사회복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65세 이상 고령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대단히 열악하기 때문이다.
- 2014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정부 통계에 의하더라도 65세 이상 고령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76.1%(674천 명)에 달한다. 이들의 임금수준(시간당 평균임금)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노인 임금근로자의 76.5%가 저임금근로자이고, 61.2%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반 정도가 소득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70%를 넘고 있어 이들 가구에 노인빈곤이 밀집되어 있고 일하는 노인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고령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등 전반적인 ‘좋은 일자리’ 정책과 함께 고령자 일자리 확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 확대, 기초연금법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의 정책을 적극 도입, 실시해야 한다.

⑩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사업장에서 일상적인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또한 내국인에 비해 상여금, 임금, 수당, 휴식시간, 노동 강도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다. 외노협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 비율이 7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화 식사 예절 등에서 차별을 느꼈다는 응답 비율이 43.9%로 높았다. 폭행 경험 26.8%, 종교차별 21.6%, 성희롱 13.5%였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에서 인권침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 임금은 최저임금이거나 그 미만으로 되어 있다.
- 하나, 근로기준법과 어긋나는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현행 근로

기준법을 차별적용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를 폐지하고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법안을 재개정해야 한다.

- 하나, 10년 넘게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대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우선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강제노동을 하지 않도록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 현재 3+1년2개월로 되어 있는 고용허가제는 합법 체류 5년 시에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기형적 제도이므로 최소 5년 이상의 기본적 체류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합법화를 실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스스로 차별에 맞설 수 있도록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노조 가입 및 결성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5) 사회복지·사회공공성 강화, 생존권 보장

□ 사회복지·공공성

①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 부양의무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인 1촌 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사위와 며느리, 계부모를 포함)에게 기준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수급 조차 받을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빈곤함에도 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부양의무제는 가난한 이들과 그 가족까지 가난하게 만드는 족쇄이자,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문제 조항이다.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신체에 등급을 부과해 복지제도 이용을 위한 접근을 막고 있다.
-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현재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이들을 복지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현재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이다. 가난한 이들의 복지 책임을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위한 장애등록은 의학적 판단에 의한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의 기준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는 장애인 개인에 맞춰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②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 확충

-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인프라는 공공임대주택 5.4%(2013년), 공공병원 5.7%(2014년), 국공립어린이집 5.7%(2014년),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2.6%(2012년) 수준으로,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높은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높은 주거비용은 청년세대의 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공공복지인프라 확대에 소극적이다.
- 현재 복지인프라는 민간어린이집, 민간요양시설, 민간병원이 대부분으로 저임금 노동 종사자와 이용자의 인권침해, 불법적 영리추구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기존의 민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서비스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여야 한다.

③ 주거권 보장

-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08년 100%를 초과하였으나 2014년에도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이 46.4%이고, 수도권은 그보다 높은 54.1%로 나타나 여전히 세입자의 비중이 높다. 임차가구의 주거안전성은 현저히 낮는데, 거주기간의 경우 자가가구는 11.2년임에 반하여 전세는 3.5년, 보증금 있는 월세는 3.4년에 불과하다. 그리고 주거 임대료 상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짧은 임대차 기간과 전월세 가격폭등으로 인한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 심화는 단순히 임차가구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소비와 내수경제 위축으로 연결되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에 장애를 주고 있으며, 청년 세대의 삶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다.
-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주요 도시 등 많은 국가들은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지자체별 표준임대료 도입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며, 서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주거빈곤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정책의 확대와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④ 아동 권리보장

-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무상보육)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고 만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매년 예산 편성시기만 되면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지방교육청에 떠 넘겨 수차례 누리과정 파행의 위기를 반복하였으며, 2016년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한시적인 미봉책으로 일부 국고지원을 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반복되는 무상보육 대란으로 보육당사자인 부모, 교사, 아동이 불안한 상황이다. 또한 보육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나,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실현하지 않고, 노동감시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더 늘리게 하는 초과보육 실시 등 보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 아동, 부모, 교사 등 보육당사자를 불안에 떨게 하고 적절한 돌봄을 받을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며, 보육현장에 파행을 가져오는 보육대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국가책임보육을 제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시설수 기준 30%까지 확충하며, 초과보육 정책을 철회하고, 국가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한다.

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불안 해소

-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지나치게 낮은 급여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 인하를 저지하고,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개

선하기 위하여 두루누리 사업을 개선하고, 출산크레딧, 양육크레딧, 실업크레딧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 500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대부분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나, 국민연금기금 운용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 정책 방향 설정,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가입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가입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행사 요건을 명시하고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청년 실업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 청년세대를 비롯하여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의 기본적 지급요건을 강화하려 하는 등 거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작동하는 실업급여 개선 요구를 외면해왔다. 실업 이후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극단적인 빈곤에 직면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가 되기 전까지 사회적 보호가 전무한 상황이다.
- 현행 실업급여제도는 엄격한 지급조건으로 인해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짧은 지급기간과 낮은 지급수준으로 인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다시 사회안전망 밖으로 내몰리게 된다. 피보험단위기간 등 실업급여 지급요건의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지급기간의 연장과 지급수준의 현실화 등 지급대상 확대 등 제도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 나아가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써 구직 활동 및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 건강권 보장

⑦ 건강보험후자 20조로 의료비인하, 어린이·노인부터 무상의료

- 박근혜 정부 들어 4년간 건강보험은 매년 후자를 냈고 후자총액은 20조원임. 건강보험 보장성은 공약에도 불구하고 60% 초반에서 악화되었다. 이 때문에 민간실손의료보험에 전 국민의 66.3%가 가입하여 민영의료 보험료까지 추가부담하고 있으며, 경제불황으로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집이 5 가구 중 하나인 상황이다.
- 건강보험후자 20조 원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써야 한다. 입원 의료비를 절반으로 줄이는데 3조원, 18세 미만 청소년 및 어린이들 무상의료에 2조 5천억 원, 노인 무상의료에 약 6조 원이 소요된다. 현재 건강보험후자의 절반 이하의 돈으로도 당장 어린이·청소년과 노인 무상의료와 입원비 본인부담 50% 인하가 가능하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후자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 중 필수적 의료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다. 국고지원과 기업부담 건강보험료를 늘려 건강보험 보장성 90%까지 올려야 한다.

⑧ 공공병원 확충 및 비영리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 현재 한국의 공공병원은 의료기관의 5%, 입원병상의 10%에 불과하다. OECD 평균 73%에 현저히 미달하는 10분의 1 수준이다. 소위 민간의료 천국이라는 미국도 공공병원이 30%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병원의 과잉의료와 상업적 의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은 돈이 되는 대도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몰려 있다. 응급의료기관이나 출산시설 등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이 많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이에 대응할 지역 공공병원이 없다.
- 상업적·영리적 의료의 폐해를 막고 적정 진료를 받기 위해, 또한 전 국민이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거점병원을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당(인구 10만~30만 명 당) 1개씩 만들어 공공병원 비중이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 과잉 배치되어 과잉의료의 원인이 되는 부실사립병원을 국가가 매입하고 공공병원을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비영리법인 병원도 공적 의료기관에 준하는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영리적 경영에 제한을 해야 한다.

⑨ 과잉진료규제와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중단

- 지나친 고가 진단기기 사용과 의료비 급증, 불필요한 진단과 치료 등 과잉의료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중심의 의료기관들이 적정진료가 아닌 돈벌이에 치중하면서 발생했고 실손보험 등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를 악화시키는 ‘의료산업화’ 즉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이 중단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는 영리병원을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허용했으며 국내 1호 산얼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허가했다. 또한 비영리병원을 더욱 영리화하는 부대사업 확대 및 병원 영리자회사를 허용했다. 영리병원 허용 관련 법령을 폐기하고 병원을 사고파는 병원 인수 합병허용 정책도 중단되어야 한다.
- 박근혜정부는 재벌보험회사 마음대로 보험상품을 만들고 보험료를 알아서 인상하는 규제완화를 시행했다. 2016년 4대 보험사의 실손보험료 인상은 18~24%에 달한다. 민영의료 보험을 규제하고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
- 원격의료는 재벌에게는 돈벌이가 되지만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므로 시범사업부터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유헬스, 빅데이터 등의 이름으로 개인건강정보를 민간기업에 팔아넘기는 개인의료정보 상업화도 중단되어야 한다. 의약품·의료기기 안전평가 규제완화도 중단되어야 한다.

⑩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와 기업 책임 강화로 보장성 강화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너무 적다. 건강보험재정 중 국가부담은 보험료 총액의 16.7%에 불과하고 이마저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2014년 기준 13%만을 국가가 부담했다. 이는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38.4%, 프랑스 52%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대만의 25%의 절반 정도이다. 건강보험재정의 국가부담 비율을 최소한 30%까지 높이고 법에 명시해야 한다.
- 기업의 건강보험료 부담도 너무 낮다. 우리나라는 기업 건강보험료 부담 비중이 50%이다. 그러나 프랑스는 65%, 스웨덴은 80%에 달한다. OECD 국가 평균 기업 사회보험료 부담은 5.2%인데 한국은 2.6%이다. 이는 기업이 40조원의 사회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고소득자와 부

자들의 부담도 늘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서는 이재용과 같은 재벌도 300만원이 최대 보험료이다. 자산소유 상한선도 30억 원으로 아무리 부동산이 많아도 7,700만 원짜리 전셋집에 사는 가구에 비해 보험료가 4배에 불과하다. 고소득자와 재벌에게만 유리한 역진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누진적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⑪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규직 의료인력 확보 및 외주화 중단

- 병원의 인력 수준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환자 당 간호사 인력이 많을수록 재원일수 감소, 감염감소, 위장출혈감소, 수술환자 합병증 및 사망률 감소가 뚜렷하다. 현재 한국 병원의 환자 당 간호사 인력 수준은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이다. OECD 평균에 비해 국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입원 환자는 15~20명으로 일본(7.0명) 미국(5.0명)보다 3배 이상 많다. 간호사가 매 시간 돌봐야 하는 일반병원 병상 1개당 간호사 수는 0.28명에 불과해 OECD 평균인 1.13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 환자 당 의료인력 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병원 의료 인력 중 비정규직 비율이 큰 것도 환자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다. 업무 숙련도 저하, 잦은 인력 교체로 인한 의료진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비정규직이 증가할수록 의료 사고의 가능성도 증가한다. 환자 안전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간호 인력을 포함한 의료기관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과 관련된 평가지표에 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을 반영하여 병원의 일자리 창출이 정규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진료보조, 응급 구조사 등 환자와 직접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는 파견금지 업무로 법에 규정하고,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병원의 직접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한 업무는 도급 및 위탁 금지 업무로 명시해야 한다.

□ 생존권

⑫ 밥쌀수입중단·쌀값 보장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당시 80kg에 17만 원하던 쌀값을 2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13만 원 선으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쌀은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이로 말미암아 쌀 값 폭락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쌀값은 30년 전으로 폭락했다. 쌀값 대폭락은 풍작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쌀값이 폭락한 이유는 매년 41만 톤 이상 수입되는 외국쌀이 쌀 재고를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가소득은 20% 이상 감소했다. 이처럼 수입 쌀이 원인임에도 정부는 쌀 수입을 유지하고 우리쌀 생산 감축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쌀값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밥쌀마저 수입하는 것은 우리쌀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밥쌀 수입은 당장 중단해야 하며, WTO 재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량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

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란 농민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기초농산물(5대 곡물, 7대 채소, 3개 과일, 한우 등 15개 품목)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수매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폭락하고 있는 농산물가격을 보장하여 농민에게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가격안정과 안전한 식량공급을 가능케 해야 한다.

⑭ 개방농정 철폐와 식량자급률 제고

- 신자유주의 개방농업 정책은 시대적 운명을 다했다. 신자유주의 첨단국인 미국과 영국 등에서 이미 자유무역 체제를 부정하고 나서는 마당에 우리가 FTA와 농산물 수입개방을 늘일 아무런 이유가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을 모두 중단하고, 그 동안에 체결되었던 한미FTA 등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수급불균형을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해결하는 농업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20%대로 추락한 식량자급률을 50%로 끌어 올려야 한다.

⑮ 행정대집행법 재개정과 무분별한 강제철거 중단

-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2015년에 개정되어 대집행과 강제철거의 요건이 다소 강화되긴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야간 강제철거 예외규정 등으로 인해 지자체들의 무분별하고 인권유린적인 강제철거의 제어수단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를 법률에서 명문화하고 야간 강제철거 인정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요건과 절차를 보다 더 엄격히 규정하여 강제철거 과정상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권력의 무분별한 강제철거를 중단시켜야 한다.

⑯ 노점감축정책 중단과 노점상 생존권 보장

-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노점상들은 10년 전에 비해 40% 이상 감축되었다. 이는 이미 조례제정으로 제도화 된 가로가판대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증명되었다. 과거의 강제철거 방식에 이어 노점관리대책이라는 방식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들의 노점단속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역의 개발자본과 지역정치 및 관료들의 성과주의가 결합해서 노점이 아니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생계형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탄압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노점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생계형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노점상들이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는 것을 노점정책의 기본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⑰ 선대책 후철거로 순환식 재개발 정착

- 주거시설이 낙후된 지역의 대부분이 개발구역이고, 그곳에 주거하는 주민들은 영세가옥주, 영세상인, 일용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다. 일단 개발이 확정되면 발전이 될 지역주변으로 투기자본들이 모여들며 전월세가 상승한다. 영세한 지역주민들은 학교, 직장 등 생활권에서 벗어날 수 없어 비싼 전월세를 감당하며 빚을 내서 이주하거나 생활권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쫓겨난 철거민들은 다시 낙후한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어서 또다시 개발로 내몰리게 된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10% 내외에 불과한 것만 봐도 이미 개발은 원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아닌 투기세력들과 자본가를 위한 정책임이 증명되고 있다. 개발이 진행될 시 지역주민들의 생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 대책 후 철거를 원칙으로 하는 순환식 개발로 되어야 한다.

(6) 성평등 포함 평등권 실현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평등권 실현

-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와 민족, 지역, 인종, 피부색, 언어,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상황,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형의 효력을 다한 범죄 전력 등 사회적 신분으로 의하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예방·금지하며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인권기본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 국가는 평등권 실현을 위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제도 및 정책 마련에 있어 인권 보호의 당사자(주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평등권 실현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와 사회는 혐오 조장과 차별 선동을 맞서야 한다. 장애인,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혐오 조장과 차별 선동에 맞서는 정부 및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② 성별 임금격차 해소

- 여성들의 삶은 이전보다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 사회의 성별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성별격차지수를 살펴보면 144개 나라 가운데 116위이고, ‘경제 참여 및 기회’ 부문은 0.537로 123위를, ‘유사업무의 남녀임금’ 격차는 0.524로 125위였다. 성별격차지수는 남성의 지위를 1로 놓고 그것에 대한 여성의 지위를 평가해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고 보는 것인데, 한국은 대부분 절반에 그칠 정도로 성별격차지수가 심각하다. 특히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거의 꼴찌로, 2015년 통계를 보면 여성의 월급은 남성의 65%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이유는 정규직 일자리에서는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이,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는 저임금 산업으로 여성 인력이 몰리는 현상이 크기 때문이다.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빈곤화와 여성노동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③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 인공임신중단(낙태)의 문제는 정부가 의료인의 비도덕적 의료행위에 임신중절수술을 포함시키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심화된 저출산 문제를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고, 여성의 재생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임신중단 문제는 단순히 임신상태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으로 국한 할 수 없는 문제이며, 임신출산과 그 이후의 양육과정 전반을 여성의 재생산 과정으로 보고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공임신중단(낙태)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서 필요한 부분이다.
- 인공임신중단(낙태) 처벌이 인공임신중단(낙태)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는데, 인공임신중단(낙태)을 불법화한 루마니아에서는 1965년부터 1984년까지 출산 10만 건 당 모성사망률이 21건에서 128건으로 증가했다. 이와 달리 인공임신중단(낙태)을 합법화한 미국에서는 1970~76년 사이 낙태 5,000건 당 사망이 30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인공임신중단(낙태) 처벌은 오히려 여성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이다.

④ 남성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에 따른 복지체계 개편

- 한국은 기본적으로 여성을 노동자로 보는 시각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없고, 사회보장체계는 남성생계부양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짜여있다. 남성이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하고, 여성이 피부양자의 지위에 머무르면서 양육자의 역할을 전담한다는 이러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여성의 노동과 복지 모든 부분에서 배제를 양산한다.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복지체계로 인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사회보장의 보호범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도 근로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노동자 5명 중 1명은 월 소득이 65만 원 이하일 정도로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가 이를 반증한다. 또한 남성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에 따라 여성의 일자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저임금이 당연한 결과로 나타난다.
- 이처럼 고용정책과 복지체계 내에서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시스템 그 어디에도 포섭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남성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에 따른 사회보장체계는 개편되어야 한다.

⑤ 성소수자 차별 해소

- 성소수자도 존엄한 시민이다. 이를 위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성소수자에게 평등한 결혼권,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며, 초중고 교육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은 모든 종류의 인권 관련 정책 및 다양성 정책을 공격하고 있으며, 정부는 성소수자 당사자의 요구보다 혐오 조장 세력들에 흔들리며 ‘사회적 합의’ 라는 명목으로 정작 국가의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한 영향으로 성소수자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침해당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혐오 조장과 차별 선동에 단호하게 맞서야하며 제도 및 정책 마련에 있어 성소수자 당사자의 참여를 안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7) 남북관계 · 외교안보정책 개혁

□ 남북관계 정상화 및 흡수통일 정책 폐기

① 남북당국 회담 포함한 대화 재개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복원

- 박근혜 정권은 압박을 통한 북한 붕괴를 공공연하게 거론하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촉구하는 등 남북대화의 기본 전제인 ‘북한당국을 대화당사자로 인정’ 하는 것조차 부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극단적인 대북정책은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보수세력들의 결집을 위한 노림수이기도 하다.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폐쇄하지 않겠다’ 고 했던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전면 중단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는 상황을 수습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법적 근거도, 절차도 무시한 채 중단시킨 개성공단 재가동을 첫 단추로 하여,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협력들을 모두 재개해야 한다.

②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및 민간교류 복원

- 남북관계는 민간차원 교류나 인도적 지원마저 단절된 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은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를 하면서도 정부, 비정부 차원의 대북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만큼은 지속하는 것과 대비된다. 민간 교류는 남북관계가 필요이상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남북 당국자간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민간교류 및 인도적 협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③ 남북 간 합의(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선언 등) 재확인 및 이행

- 역대 남북당국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통일의 3대 원칙을 합의한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1차 남북 정상 선언인 6.15 남북공동선언, 2차 남북 정상 선언인 10.4 선언 등 주요 합의를 해왔다. 그간의 남북 당국간 합의에는 통일의 원칙과 방안, 교류 협력, 군사적 신뢰 구축, 평화체제 수립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기존의 남북간 합의 및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반도/동북아 핵문제 해결 및 평화 실현, 균형외교

④ 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 중단

- 한국배치 사드는 남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 미국은 사드 레이더의 뛰어난 탐지식별능력을 활용해 미국, 일본을 위한 한미일MD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한미일MD와 한미일 동맹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삼각 MD를 구축하는 주요 요소이며,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러시아를 겨냥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 결과로 한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에 속박되어 우리의 주권과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한 균형 외교를 펼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의 길을 열어준다. 이처럼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협정 등 한미일 MD와 삼각동맹은 우리의 주권과 자존, 평화와 경제, 성주와 김천 주민의 생존과 원불교 성지를 해친다.

⑤ ‘위안부’ 굴욕 합의 무효, 재협상 및 한일과거사 해결

-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한일 일본군 ‘위안부’ 야합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강점과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과 피해 배상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내용으로,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긴 굴욕적인 합의이다. 한일 ‘위안부’ 야합은 한미일 삼각 동맹 구축에 걸림돌이 되는 한일 과거사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박근혜 정부를 굴복시킨 결과이다. 이에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위로금’ 수령 강요를 중단하고, 소녀상은 보전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은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한국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

⑥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소파 개정, 방위비분담금 삭감)

- 작전통제권은 전쟁 수행의 핵심 기능인 작전과 정보 분야를 통제하는 권한으로 군사주권의 핵심이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과정에서 강압을 통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장악했다. 이를 두고 리처드 스틸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경이로운 주권의 양도” 라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작전권 환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버렸다. 방위비분담금협정은 한미소파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 할 미군주둔경비 일부를 한국에 떠넘긴 불평등한 제도이다. 미국은 또 자신들이 내야할 기지이전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을 1조원 넘게 빼돌려 충당했다. 트럼프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데 이런 부당한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한미소파는 형사재판관할권, 환경오염 치유 등에서 미군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우리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⑦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한미연합군사훈련 축소, 북 핵실험 동결)

- 2008년 12월, 6자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미당국의 대북 압박정책과 북의 핵실험 등이 맞부딪히면서 한반도의 핵대결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한미당국은 북한에게 선 비핵화를 요구하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서로 불신과 대결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9.19공동성명에 기초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병행 추진만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미 간, 남북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평화협정을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실현해야 한다. 당사국들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대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당국은 대북 공세적 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함으로써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 외교·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⑧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통제권 강화

-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사면초가의 위기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기습적으로 체결하였다. 국가간 협약을 통해 한일 간의 군사정보 공유에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추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협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이므로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독단으로 강행처리 되고 말았다.
- 이에 국방, 외교권 등 주권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에서 반드시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개정·강화하여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⑨ 외교, 국방 분야 정보공개 강화 통한 국민 알권리 및 주권 보장

-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간 합의의 내용은 물론 제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드는 MD 무기의 본성상 작전의 지리적 범위나 주변국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주권의 통제가 필요하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고 하며 국민

이 외교 국방 통일 등 중요 정책에 대해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제2호 등을 삭제하여 관련 기관의 자의적 해석여지를 없애고 국민의 알권리와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⑩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의 정치개입 금지 및 문민통제 강화 등 국방개혁

-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 대화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과도한 국방비나 병력을 줄이고 고급장교에 대한 특혜도 없어야 한다. 박근혜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사병 복무기간 단축도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심각한 군대 내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외부감시 제도인 군 음부즈만을 국회 내 상설기구로 설치해야 한다.
- 2012년 대선에 사이버사령부가 개입한 것은 군의 중립을 선언한 헌법 5조 2항, 군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군형법 94조를 위반한 중대 범죄다. 따라서 군의 정치개입 등 불법적 행위를 근절하려면 최소한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인적 및 조직적 청산이 이뤄지고 재발방지 대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⑪ 미국 요구에 따른 무분별한 해외파병 반대(해외파병법안 제정 중단)

- 대한민국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한 제 5조와 국군의 해외파병에서 국회의 동의권을 부여한 헌법 제 60조에서 국군의 임무와 국회에 의한 통제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가장 강력한 물리력인 군대를 파병하는 문제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의 통제가 확고히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다국적군 파병, 상업적 목적의 파병 등 국군 해외파견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파병을 정당화하고 향후 무분별한 파병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해외파병법(국방위원회에서 심사 중)은 폐기되어야 한다.

(8) 위험사회 구조 개혁

①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 현재 한국에는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다. 우리는 전 세계 1위의 원전 밀집국의 오명을 갖고 있다. 원전 확대하는 것은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미래로 떠넘기는 일이다. 또한 삼척과 영덕에서는 원전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투표결과 85%, 91.7%의 주민들이 원전 건설에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 현재 신규 원전을 건설, 계획하고 있는 한반도 동남부 지역은 경주지진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지진발생 위험지대임이 밝혀졌다. 이미 경주에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 원전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나머지 원전들의 안전성,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고통 속의 인근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위험사회에서 벗어나려면 지진위험지대에 건설 허가된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삼척, 영덕, 울

진에 건설예정인 모든 원전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 그리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조속히 폐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② 4대강 16개 보 수문 상시 개방 및 책임자 청문회

- 4대강 사업이 완공되고 22조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해마다 4대강의 수질, 수생태계 부문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국무조정실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수질개선효과는커녕 녹조와 BOD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며, 강생태계를 훼손시키고 홍수 위험을 증폭시켰다.
-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낙동강 수계 최적연계 현장 시범 적용안’을 통해 인정했듯이 수질 악화 해소와 녹조 저감을 위해서는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동시에 한꺼번에 개방해야 한다. ▲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 청문회도 실시되어야 한다. ▲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을 통해 진상 규명, 구조물 안전성, 주민피해, 생태공원 유지관리,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의 검증을 제도화해야 한다. ▲ ‘4대강 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복원) 위원회’를 통해 4대강의 재자연화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 전 국민의 우려 속에 실시된 4대강사업이니 만큼 보의 철거와 강복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 4대강사업이 끝나고도 이어지는 경인운하 연장 사업, 도수로 사업, 저수지 증고 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 친수구역 개발사업, 영주댐 건설, 지리산댐 건설 등의 후속사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③ 위험 요인들에 대한 성역 없는 정보공개

-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한국사회는 ‘비밀은 위험하다’고 각성하였다. 기업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위험을 숨겨왔으며, 정부는 이를 방치해왔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위험을 바로잡는 출발은 국민이 알권리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정보가 성역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는 노동자와 주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미래의 재앙이 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정보 역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져야 한다. 국민의 안전에 관련한 정보에 성역이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정보는 행동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은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과 동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논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업과 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위험을 방치하는 대상에 대해 정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화학물질 등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는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고 알기 쉬운 형태로 가공되어 전달되어야 한다.

④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의 금지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어떤 독성물질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많은 소비자들이 기침이 심해지고 피부가 이상해진다는 호소를 기업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그들은 안전을 의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으박질렀다. 결국 규모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2013년에 정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제정하면서 마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화평법이 기업을 죽이려 한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완화하라고 명령하였다.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정농단의 주범들에게 로비하여 화평법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검찰조사와 국회의 국정조사특위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민은 더 이상 기업과 정부를 믿지 않는다. 국민은 요구한다. 독성을 확인하지 않은 성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제품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살생물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물론 모든 산업용제품에 까지 이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노동자와 주민과 소비자 모두 안전한 나라를 만들자.

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원청 기업이 하도급을 주는 이유 중에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 이 40%로 1위이다. 재벌 대기업은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 해서 산재예방, 보상, 처벌에서 빠져 나가고, 오히려 산재보험료 할인은 매년 수 백 억 원을 받고 있다. 주요 30개 기업의 산재사망의 90%가 하청 노동자다. 매년 600여명이 사망하는 건설업, 한 해에 10명이 죽어나간 현대 중공업, 철도 지하철의 선로보수, 구의역의 스크린 도어 사망사고, 에어컨 설치기사 등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화학산업 밀집 산업단지, 철도, 지하철, 병원, 원전, 한전에서든 외주화를 남발해서 위험의 외주화는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구미불산 누출사고로 인근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 되었고, 철도 지하철의 선로보수, 신호, 전기, 소방 화재 등 외주화가 남발되고 있어, 작은 사고부터 상왕십리역 추돌사고처럼 대형사고까지 시민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 위험한 업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
- 간접고용이 확대되고 하청 산재가 다발하고 있으나, 현재는 원청 책임이 지극히 제한적이다. 같은 사업장에서는 원청이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하고,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각종 안전보건규정도 직접 준수하고,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처벌도 받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안전보건을 위한 비용을 하도급 금액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하청 산재와 원청 산재를 합산하여 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는 등 원청 책임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⑥ 중대재해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 이천 냉동창고 40명 노동자 산재사망에 기업이 받은 벌금은 2,000만원으로 노동자 1명의 사망에 벌금 50만 원꼴에 불과했다. 하청 노동자가 줄줄이 사망해도 원청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고, 가물에 콩 나듯 처벌이 있어도 하위직 관리자일 뿐 원청의 최고 책임자 처벌은 없다.
- 38명의 사망과 전 국민을 공포에 메르스 사태, 그러나 삼성이 받은 과징금은 800만원이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든 핵심 최고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구조의 현장지휘를 맡았던 해경 경장 외에 정부 책임자 처벌은 없으며, 청해진 해운도 온갖 법을 적용해서 형량만 늘리고, 기업 자체에 대한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과 공무원 최고 책임자의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한다. 이미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제정되어 있는 기업 살인법이 한국에서도 제정되어야 한다.

⑦ 규제프리존법 등 안전규제완화법안 폐기

-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이 분할 운영하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 공적 규제를 무력화하는 법이며, 전경련이 부당한 로비를 통해 입법화하려 했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법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78개의 규제를 완화하는 재벌특혜법이다. 이법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안전성 입증을 기업에 맡기고 있는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기업의 왜곡된 안전성 검증으로 인한 수천 명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배상책임제도가 미흡한 상황을 고려하면 제2의 가슴기살균제 참사를 불러오는 것이다. 또한 학교 앞 호텔허용 등 기업 특혜성 사업, 국유자산의 장기임대와 수의 매각을 전제로 한 보호지역의 막개발 허용하는 산악 및 해안관광 개발 등의 우려도 매우 높다.
- 규제프리존법은 공청회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특혜·환경파괴·국민안전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⑧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 기업의 이윤논리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정부의 안전규제 완화로 노동자와 시민은 더욱 위협해지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 강화는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은 기업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 피해자는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중대재해의 경우 원인제공자가 정부와 기업일 경우, 피해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관을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며, 모든 정보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 피해자는 충분히 존중받고 위로받을 권리가 있다. 언론은 원인과 재발방지에 대한 심층적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상처를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위로, 그리고 희생자가 있을 경우 충분히 추모하며, 기억하고 기록해야 한다.
- 중대재해로 피해를 당하거나, 희생자가 생기는 경우 어떤 배·보상으로든 그 회복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배·보상은 피해자가 온전하게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고, 공동체도 그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⑨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철도 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 서울 지하철은 인구밀도 세계 216개 도시 중 20위의 대규모 도시이고, 하루 7백만 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이다. 지하철은 시민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기관사 1명이(1-4호선, 서울메트로만 2인 승무) 승객 수천 명을 책임지는 구조로 상시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역무인력의 최소화로 위험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192명의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지하철 기관사 10명이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대구참사도 2인 승무였다면 다른 대응이 가능했고 많은 승객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될 수 있었을 것이다.
- 지난해 발생한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도 2인 승무였다면 대응방식이 달라졌고,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계속되는 지하철 기관사 자살을 막기 위해 여러 대안

과 연구를 통해 2인 승무 기준을 만들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으로 지하철이 운행되기 위해서 지하철 2인승무제도가 법제화(철도안전법) 되어야 한다.

⑩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현과 방사능·GMO 없는 안전급식

- GMO 상용화가 추진된 지 20년이 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용GMO를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이다. 현재 우울증, 자폐증, ADHD, 암 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GMO는 아이를 비롯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콩, 옥수수, 면화, 유채 등 대부분 식용 GMO는 식용유, 장류, 과당 등으로 제조되고 사료로 쓰이고 있다. 현행 불완전한 GMO 표시제로 인하여 GMO 원료로 만들었지만 가공이후 DNA 또는 단백질이 발견되지 않으면 GMO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 GMO 원료 수입은 많은데 주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GMO 원료기반에 의한 가공품의 GMO완전표시제 법개정이 시급하다. GMO 벼 등 시험재배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우선적으로 성장기 아이들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하여 학교급식에서 방사능과 GMO 식재료를 퇴출시켜 안전한 학교급식을 추진한다.

⑪ 미세먼지(PM 2.5)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3단계 (연 평균 $15\mu\text{g}/\text{m}^3$)으로 강화

- 2004년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PM2.5)가 $10\mu\text{g}/\text{m}^3$ 상승할 때 사망률이 0.9% 증가한다고 밝혔다. 호흡기질환이나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각각 1.3%, 1.1%이나 증가했다. 세계질병 부담(GBD)은 미세먼지(PM2.5) 때문에 2010년 한 해 세계적으로 320만 명이 조기 사망했다는 결과도 발표했다. 미세먼지의 위해성은 WHO가 2013년 미세먼지(PM2.5)를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심폐질환과 폐암에 의한 사망률 증가를 최저수준으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10\mu\text{g}/\text{m}^3$ (PM2.5) 정하고, 기준달성을 위한 3단계 잠정목표($35, 25, 15\mu\text{g}/\text{m}^3$)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2단계 수준($25\mu\text{g}/\text{m}^3$)에 머물러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10\mu\text{g}/\text{m}^3$)에 2.5 배 이상 느슨하고, 미국과 일본의 $15\mu\text{g}/\text{m}^3$, 호주 $8\mu\text{g}/\text{m}^3$ 등 주요 국가의 환경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수도권외의 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수준까지 낮출 경우, 조기사망자가 7,852명 감소하는 등 연간 약 3.3조원의 건강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변경된 환경기준 달성을 목표로 지역별, 발생원별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 $10\mu\text{g}/\text{m}^3$ 를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우선 현 $25\mu\text{g}/\text{m}^3$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15\mu\text{g}/\text{m}^3$ 으로 강화해야 한다. 미세먼지(PM2.5)배출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하고, 적극적인 차량수요관리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⑫ 인간 동물 자연에 고도의 위험을 부과하는 공장식 축산정책 폐지

- 동물의 건강과 인간의 건강은 상호 의존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과 생태계의 상호 연관성을 부정한 채 동물을 오직 생산기계로 간주하여 철저히 본성을 억압하고 감금 착취하는 동물학대적 생산 방식인 공장식축산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의 닭과 돼지의 99%는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사육된다.
- 공장식 축산은 항생제 상시 사용, 유전적 다양성 상실, 과밀과 비위생으로 대규모 인수 공통 전염병은 물론 항생제 내성 등 인류가 예측하고 관리 제어할 수 없는 실질적이고 가공할 위험을 부과한다. 이제 토착화된 조류독감은 이번 단 한번에 4천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 매몰로 몰아갔다. 이에 더하여 구제역까지 발생한 이 대 재앙은 근본적으로 항생제와 동물에 대한 학대, 자본 독점에 의지해 불안하게 유지되는 잘못된 시스템 ‘공장식 축산’에 내재되어 있다.
- 따라서 그 파국적 결과의 일부인 살처분이나 방역 방법의 개선으로는 인간과 동물을 대재앙의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없다. 모든 생명체가 공장식 축산이 부과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은 공장식축산이 폐기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책적 지원이 공장식 축산이라는 괴물을 키운 만큼 이제 모든 생명을 아울러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프레임이 변경되어야 하며 공장식 축산 정책 폐기를 위한 절차와 방법이 시급히 논의 되어야 한다.

(9) 교육불평등 개혁과 교육공공성 강화

① 학력차별철폐(고용/승진/임금차별금지) · 학벌폐지(학교평준화)

- 한국 사회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사교육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는 답변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현재 고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졸 이하의 임금은 74, 대졸 이상은 145이며, 이는 OECD 가입국 중 격차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 고용·임금·승진 등 노동시장에서의 만연한 학력 차별은 결국 교육 서열화와 경쟁 심화의 근본 원인을 제공해 한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무엇보다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시장 해결에 나서 학력 차별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소득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 나아가 학력 구별의 주요 근거가 되는 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 및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②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 한국은 누리과정 무상교육·보육 실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높은 사립 유치원 비중에 따른 추가 부담(2016년 평균 11.3만원), 부족한 교육 예산 등으로 영유아 무상교육은 말뿐이며, 고등학교부터는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아 연간 200만원(일반고)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대학 등록금은 미국 사립대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이미 악명 높다.

- 반면, 대다수 OECD국가들은 의무교육 대상 연령을 취학 전부터 18세까지 확대하고, 의무교육 기간 동안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등도 고등학교 졸업까지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등을 국가가 무상 지원한다. 또한 독일의 경우 경제력과 상관 없이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한 학기 70만원 수준의 대학등록금을 2013년 전면 무상화했다.
- 교육재정 대폭 확대,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국공립대 무상교육, 사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해 우리사회도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 특권경쟁교육 폐지 및 평등교육 실현(초중등교육법 개정)

-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고교체제가 구조화되면서 고교 간 학력격차 및 1인당 공교육비 지원 격차 등 교육불평등이 심화되고 예산 낭비가 초래하고 있다. 과학고, 외고, 예술고 등 특목고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입시교육으로 변질되었고 자사고 교육비가 연간 1천만원이 넘어 상류층을 위한 귀족 학교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이미 전국민이 알고 있다.
- 고교 평준화는 고등학교 서열화를 없애고, 학교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고등학교 교육단계까지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철학을 담고 있었지만, 경쟁교육 체제의 도입으로 이러한 취지는 무력화되었다. 1%를 위한 특목고, 자사고 등 귀족교육정책은 폐기되어야 하고, 99%를 위해 고교 평준화와 고교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

④ 고등교육예산 GDP 대비 1% 이상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매우 부실하다. 그 원인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지출평균은 GDP의 1.4%인데 비하여 한국은 0.8%에 불과하고, 그 결과 노동자 서민의 사적 부담은 크게 증가했다. 대학생 1인당 공공 교육비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33%, OECD평균의 59% 수준에 머물러 있다.
-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학등록금을 내고 있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에 매진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없이, 그리고 공적 투자 없이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대학에 대한 공적 예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의 투명성과 민주성 및 공적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⑤ 입시 폐지·대학 평준화 및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구성

- 한국사회에서 대학입시는 학교와 학과를 서열화하고, 초중등교육부터 입시에 종속시켜 공교육 파행의 주범이 되고 있다. 통합네트워크의 핵심은 공동입학과 공동학위제이다. 또한 대학입시경쟁에는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교육비가 동반되고 있으며, 대학입시를 매개로 사회적, 교육적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다.
- 입시경쟁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서열화를 해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대 등 모든 국공립대학을 하나의 대학으로 통합한 ‘국공립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으로 전환하고, 수능시험, 대학별 본고사 등 현재의 대학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국공립대학통합네트워크의 입학 자격(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만을 따지는 ‘대학

입학자격고사' 로 전환해야 한다.

- '국공립대학통합네트워크'의 외부에 존재하는 일부 독립사립대에 대해서는 내신과 대학별 고사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입시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입시경쟁의 폐해를 해소해야 한다.

⑥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및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 사립대학 위주의 현 대학 체계는 비싼 등록금, 열악한 고등교육 환경, 극심한 대학 서열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대학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의 수평적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공영화 즉 공영형 사립대학의 육성이 필요하다.
- 정부 등 공적 기관으로부터의 운영경비 50% 이상 지원을 받는 사립대학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범주화하고, 그렇지 않은 사립대학은 독립형 사립대학으로 구분한 뒤, 공영형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인사와 예산에 대해 학교법인이 아닌 대학구성원과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학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권을 갖도록 해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학교법인의 비리로 인하여 부실한 사립대학도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예산 지원 등을 확대하여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 시키도록 한다.
- 공영형 사립대는 장기적으로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에 통합해 공동 운영토록 해 서열화 해소,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⑦ 교육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 실현

- 학교는 우리 사회의 미래세대를 양성하는 중요한 곳이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학교는 비정규직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비정규직이 존재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에는 비정규직 교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사무업무와 관련된 사무·행정보조, 교무보조, 수업과 관련된 과학실업보조, 실습보조, 특수교육보조, 방과후학교 교사 등 30여개 직종에 걸쳐 수십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한다.
- 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에서의 연구와 강의의 절반은 비정규 교수·연구자들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조교와 산학협력 비정규직원, 외주·용역 노동자인 청소·시설관리 노동자 등 대부분의 대학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다.
- 교육의 질과 종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법정 교원확보율 준수, OECD 평균 수준의 교원/학생 비율 달성 등을 통해 정규직 교사·교수 비율을 높이고,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통해 교육 사무와 관련된 교육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야 한다.

⑧ 교수·교사확보율 정규직으로 100% 확보 의무화

- 2015년 전체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교원 비율은 64.3%로 비전임교원 비중이 35%에 달한다. 전임교원의 경우에도 2003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 도입 이래 대학 신입교수의 약 30% 정도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채용되고 있어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

초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도 사립의 신규교사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공립학교도 비정규직 교사 비중이 10%를 넘는 상황이다.

- 법정 교원정원을 100% 모두 정규직으로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수·교사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향상시켜야 한다.

⑨ 시간강사법폐지와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 현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와 연구의 40%는 비정규교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불안정한 비정규직 신분은 교육 및 연구의 질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비정규교수 당사자와 학문후속세대 나아가 이 나라 학문과 교육의 미래를 위해 시간강사제도와 시간강사법을 폐지하고 수 십 가지의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 연구강의교수제도는 시간강사 등의 비정규교수들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나아가 고용불안과 저임금 및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리보장, 재계약조건, 보수 관련 규정 등을 법률로 정하는 제도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연구강의 교수에게 소요되는 기본 인건비는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10) 언론개혁과 자유권 보장

① 언론장악방지 4법 개정

- 전대미문의 최순실 국정 농단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공영 언론은 여전히 축소, 은폐, 몰타기 보도로 일관하고 있음. 공영언론의 공적 책무는 포기한 책임명권자에 대한 충성만 남아, ‘박근혜 순장조’ 를 자임하고 있음. 최근에는 YTN, EBS 사장 선임에 최씨 일가가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공영언론지배구조 개선’ 을 취입과 함께 내팽개친 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언론장악 컨트롤타워로 구축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와 사장으로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뉴라이트 인사들을 선임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 온 ‘박근혜 언론 부역자’ 에 대한 단죄와 청산 없이는 언론의 공정성은 보장될 수 없다.
-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등 이른바 ‘언론장악방지 4대 법안’ 을 개정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 13명 중 여야 7 대 6 구도로 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13명 중 9명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집회시위자유 확대

- 집회의 자유는 사회 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하여 사회적 통합기능을 하고, 언론매체 등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 집단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표현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는 국제 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후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 특히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 공관 100m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제12조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는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평화적인 집회 시위의 개최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으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 이후 분노한 시민들의 평화로운 촛불집회도 청와대 100m 앞에서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어디에서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국회의사당, 청와대, 법원, 국무총리 공관 등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를 폐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제12조를 폐지하거나,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을 과잉처벌하기 위해 도입취지와는 무관하게 남용되고 있는 일반 집회 및 시위 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을 중단해야 한다.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물대포를 시위진압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더 이상 물대포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시민사찰-블랙리스트 금지 입법

- 블랙리스트 문제는 문화예술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21조, 22조 등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문화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새누리당 집권 이후(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예술 검열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으며, 특히 이번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예술 검열을 지원 사업과 연계한 일상적인 통제와 관리가 정부 주도 아래 진행되었다. 이번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블랙리스트 사태는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에 있어 “예술 검열의 정책 구조화”, “이념 대립 정책의 지원사업화” 라는 심각한 악영향을 낳고 있다.
-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법률적인 층위에서만 아니라 문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문화행정 기관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 과정으로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하여 문화행정기관들의 독립성, 자율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행정의 자율성과 협치(거버넌스)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다양한 전문기관들이 설립되었으나 현실에서는 청와대, 중앙부처 등의 일방적인 지시와 통제에서 하청계열화되고 있다. 문화전문기관들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 운영이 가능한 정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이런 맥락에서 (가칭)〈문화예술 지원 관련 차별 및 배제 금지법〉(블랙리스트 금지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문화기본법 내에 차별 및 배제 조항을 추가하는 법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④ 국가보안법 폐지

- 국가보안법이 갖는 문제를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헌법 위의 법률이라는 점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알 권리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법이다. 다른 하나는 민족통일의 문제를 다치게 하는 법률이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하여는 증오와 대결만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평화 공존하는 것을 범죄시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국가보안법의 발생양상 또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갉아먹고 있는 동안에도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또는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통을 겪으신 분들에 대한 재심사건은 족족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서 최근의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무죄를 선고하면서 거액을 배상해주는 희극 같은 일들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 냉전적이고 구시대적 발상과 시대역행적 행태가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기하고, 사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⑤ 테러방지법 폐지

-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테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여러 행위를 폭넓게 열거하고 있으며,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민중총궐기 대회를 “폭동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명백한 테러 범죄” 라고 규정하고, 용산참사 이후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도 준도심테러 운운하며 자신의 과잉진압을 합리화하는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테러위협인물’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있으며, 국정원장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국정원이 자의적 판단으로 ‘테러위협인물’을 지정할 수 있다. 테러위협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정보, 노조·정당의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생활 등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 무차별 수집이 가능하다. 또한 테러위협인물에 대한 조사 및 추적권한이 부여되고, 감청사유 확대에 의해 영장 없이 36시간 감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되는 등 국정원의 무제한 국민감시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국정원에게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는 인권침해법인 테러방지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 수사기관이 인터넷 및 유무선통신 상에서 국민의 행동을 몰래 엿보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사이버사찰의 문제가 심각하다. 압수수색 영장 하나로 몇 년치 이메일을 모조리 압수하고, 영장 제시 없이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정보(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를 본인도 모르게 가져가고,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 근처에서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와 무관한 다수의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가져가는 기지국 수사 등 과도한 사이버사찰로, 프라이버시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2~2014년 3년간 3천만 건이 넘는 통신자료(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으나, 제공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알려주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영장제시 없는 통신자료 수집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사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자료수집을 위해 영장주의 등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통신자료를 수집한 후 정보주체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⑦ 양심수 전원 석방

- 이른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교사·공무원 노동조합 탄압, 총선 전 탈북자기획입북 의혹 사건, 민중총궐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사건과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공안탄압, 세월호 집회 등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구속, 불구속, 벌금형 선고, 인터넷 논객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 등 사회전반에 걸쳐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안탄압을 자행하였다. 박근혜 정권하의 양심수 대부분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었고, 집시법과 경찰의 과잉 집회시위 대응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청와대 공작정치에 따른 각종 시국 사안에 대한 탄압으로 양산되었다. 박근혜 정권과 같이 국정농단과 공안탄압을 정권유지의 주요수단으로 삼는 정권은 이러한 구시대적 낡은 법으로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수많은 양심수들을 양산하였고, 이러한 양심수를 석방하여야 한다.

□ 6대 긴급현안

① 세월호 진상규명

- 역사적인 촛불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더불어 이른바 참사당일 대통령의 ‘7시간’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은 확고부동한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특검에서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된 진실의 일각을 수사하고 있는 것 외에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지난해 9월말 부당하게 강제 해산되어 실질적인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특조위가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각각 요청했던 특별검사 임명조차 아직까지 국회 의결을 얻지 못해 해경지도부 등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도 지체되고 있다.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자 미수습자들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세월호 인양을 2016년 내에 완수하겠다고던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특조위가 이를 조사할 기회가 사라졌다. 2017년 뒤늦게 세월호가 인양된다 하더라도 특조위가 이미 강제 해산된 상황에서 이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주체가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 이에 이전보다 강력한 조사권과 수사 및 기소권(특검요청 및 추천권 등)을 지닌 독립적인 특조위가 조속히 구성되어 세월호 선체조사를 비롯한 진상규명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 혹은 재제정해야 한다. 특히 20대 국회 개원 직후 과반수 국회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발이 묶였다가 지난 연말 조정 기한이 만료된 개정안과 청원안을 조속히 처리하거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 무엇보다도 올해 상반기 인양 예정인 세월호 선체는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만큼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와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2월 임시국회의 가장 시급한 임무다. 이를 위해 국회는 특별법 개정 혹은 재제정과 별도로, 세월호 선체의 독립적인 조사와 미수습자 수습, 영구보존을 위한 한시적인 특별법을 2월 국회 기간 동안 제정하여 인양에 대비해야 한다.
- 진상규명과 인양 방해에 가담한 인사들에 대해 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특조위 강제 해산, 수사 및 조사방해, 세월호 인양 방해에 가담했던 청와대와 당시 해수부, 법무부, 국정원과 검찰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해수부 인양추진단의 인양 지연, 선체 훼손, 조사 비협조, 기타 인양방해 행위 여부 등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② 박근혜정권의 폭력살인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경찰 공권력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을 물대포 직사로 죽음에 이르게 한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을 빼놓을 수 없다. 박

근혜정권은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과 조차 없다. 또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자 곧바로 사망진단서 “병사” 기재를 빌미로 사인을 은폐 조작하려는 시신탈취, 강제부검 시도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 정부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박근혜정부의 패악무도한 실체를 뚜렷하게 각인시켜 주었다.

-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가한 국가의 잔인한 폭력 살인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민주주의와 인권, 집회의 자유를 논할 수 없다. 국회에서 “백남기 청문회 (2016.9.12)” 가 열렸고 검경의 강제부검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실이 대부분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법적인 조치는 전무하고 야3당이 공동 발의(2016.10.5)한 “백남기 특검” 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 2015년 11월 18일, 강신명 전(前)경찰청장 등 경찰 책임자 7명을 형사 고발하였음에도 검찰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검찰에 책임자 처벌을 맡겨 놓을 수 없다. 국회는 박근혜정권이 무고한 국민을 몰대포로 살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나서야 한다. 상설특검 1호로 야3당이 공동 발의(10.5)한 백남기 특검 즉각 실시해야 한다.

③ 사드 한국배치 중단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는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국내법과 달리 타개하기 어렵고 주권을 훼손하게 되므로 국회 차원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핵 위협과 안보를 내세워 강행된 사드 배치는 결론적으로, 북의 위협을 막을 수도 없고, 주변국(중국 등)의 반발과 군사적 대응 등 동북아 신냉전을 초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 사드 한국배치는 ▽ 성주, 김천 주민의 직접적 생존권 위협, 원불교 종교 자유 침해 등 헌법 위반 ▽ 한반도 평화위협 및 동북아 신냉전 초래 ▽ 일본 군국주의 보장 등 안보위협 ▽ 중국 등 주변국 반발과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 초래 ▽ 국회 고유 권한 침해와 헌법 위반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 결론적으로 현재 강행되고 있는 사드 한국배치는 국회 권한인 헌법 60조 위반이다. 체결 및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없는 사드배치 결정은 무효이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 야 3당 사드 배치 중단 및 철회 결의안 채택 ▽ 최소한 차기정권 결정 당론 채택 및 야3당 합동 발표 ▽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 결의 ▽ 권한쟁의심판 추진 등 국회 고유 권한 침해와 헌법 위반 대응 등이 절실하다.

④ 국정교과서 폐기

- 교육부는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굴복해 국정교과서 사용을 1년 유예했다. 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고 2017년도에는 일부 연구학교에 국정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한다. 교사 승진 가산점과 연구비 1,000만원이라는 미끼로 중·고등교사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런 꼼수에도 교육현장으로 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자, 교육부는 원래 2월 10일까지였던 연구학교 신청 기간을 5일 더 연장하는 또 다른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게다가 2018년도부터는 국정·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겠다면서 대통령령까지도 규정을 어겨가면서 뜯어고치고, 2018년에 쓸 검

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 맞춰 겨우 6개월 만에 졸속적으로 만들라고 강요하고 있다. 새로운 검정 교과서마저 ‘국정교과서화’ 하려는 꼼수이다.

- 시민사회는 지난해 국정화 고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효력정지신청,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지만, 행정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아직 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화저지넷의 입법청원 제기로 야3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이 또한 법사위에 묶여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2018년 국·검정 혼용을 용납할 수 없다. 검정제로의 전환 또는 자유발행제의 새로운 도입을 전제로 한 2015 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의 역사쿠데타에 공범 역할을 한 교육부 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부역자 처벌과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⑤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악 추진 중단

-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정부가 모든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에 따라 노사관계의 파행을 불러오고 있다. 이는 결국 공공부문의 비정상적 운영을 불러오게 되고, 국민의 직접적인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 정부가 겨냥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로 인한 노조 무력화는 공공부문 민영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의 파괴이다.
- 따라서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교섭을 통한 합의사항임을 인정하고, 성과연봉제 정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도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다. 이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부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 전반, 임금체계를 포함한 낙하산 인사 방지 방안 등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국회는 ▽ “박근혜표 노동개악 정책”인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확대 강행 중단,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변경인사 지침 폐기, 자의적 기준에 의한 단체협약시정명령 중단, ▽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 당사자를 포함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성과연봉제 등 노동개악을 중단시켜야 한다.
- 또한 박근혜와 청와대의 공안통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당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하루빨리 원상회복되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징계를 받은 간부와 조합원의 원직복직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전횡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부정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행정과 교육에 대한 감시와 비판, 개혁 기능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교사·교수에게도 헌법상 기본권인 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

⑥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 전대미문의 최순실 국정 농단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KBS, MBC, 연합뉴스, YTN 등 공영언론은 여전히 축소, 은폐, 몰타기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영언론의 공적 책무는 포기한 채 임명권자에 대한 충성만 남아, '박근혜 순장조' 를 자임하고 있다. 최근에는 YTN, EBS 사장 선임에 최씨 일가가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공영언론지배구조 개선' 을 취임과 함께 내팽개친 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성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언론장악 컨트롤타워로 구축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와 사장으로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뉴라이트 인사들을 선임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앞장서 온 '박근혜 언론 부역자' 에 대한 단죄와 청산 없이는 언론의 공정성은 보장될 수 없다.
-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등 이른바 '언론장악방지 4대 법안' 을 개정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 13명 중 여야 7 대 6 구도로 하고, 사장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13명 중 9명 이상)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